

기본연구 2011-22

제주지역의 여성 정치참여 확대 방안

- 지방의회 진출 여성 도의원을 중심으로 -

문순덕 · 김진호

발 간 사

제주도는 자연 환경뿐 아니라 문화자원도 풍부하며, 이 문화자원을 생산해 내는 제주사람들의 저력은 세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여성들의 사회적·경제적 역할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제주의 귀중한 자원이라 봅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인적 자원인 제주여성들이 정치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목적을 두고 연구하였습니다.

이에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이후 2006년 6·2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다섯 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선출직 여성정치인이 부재한 원인을 알아보고, 여성들의 정계진출을 통한 직접적인 정치참여 확대 방안 모색을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지만 연구방법과 대상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지방의회에 진출한 여성 도의원들의 선거경험을 종합하여 정리하는데 의의를 두었습니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는 여성정책 결정과 집행에 도움은 주는 것은 물론 여성의 원 비율에 따라 여성의 권한척도가 정해지고, 세계적으로 양성평등국가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가 됩니다. 또한 지역의 여성정치인 비율은 해당 지역의 양성평등 정도를 알려주는 자료로도 활용됩니다.

이러한 여성권한척도의 기준이 되는 여성 정치의 세력 확대를 위해 현재 비례대표 할당제, 여성의무공천제 등 법·제도적 개선이 수반되면서 정치참여 기회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더 많은 수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당과 여성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의지가 집약된다면 제주지역에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확대되는 시기는 빨라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지도자 양성과 교육과정 운영이 활발해져야 합니다. 어느 분야이든 지도자 양성과 교육과정 운영이 중요하나 정치 분야는 더욱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치지도자는 미래세대부터 차근차근 훈련과 양성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는 지역사회의 책무이자 권리에 해당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2012년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을 앞두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여성계에서는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향후 제주지역의 여성 정치지도자 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성심성의껏 설문에 응해주신 역대 여성 도의원과 도움을 주신 전문가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마움을 전하고자 합니다.

2011년 11월

제주발전연구원 원장 양 영 오

연구요약

I. 서론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수립과 동시에 남녀 공히 참정권이 부여되었으나 투표행위를 통한 정치참여 정도로 출발하여 1990년대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되면서 정계 진출을 시도하는 정치참여 형태가 본격화되었다고 봄.
- 제주지역에서는 제1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통해 광역의원 비례대표로 여성의원 1명이 당선되었으며 이후 지역구 여성 광역의원 당선은 전무함.
- 이런 점을 감안하여 전국적으로 여성들의 사회참여 의식이 높아지면서 제주여성들의 정치의식도 향상되고 있지만 결과는 미미하므로 그 원인을 진단해 보고 향후 제주여성 정치인 양성 방안을 모색해 봄.
-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제도의 개선, 여성의 정치역량 강화, 정당의 역할, 사회문화적 여건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이 여성의 정치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해 중장기적인 방안을 찾았음.

2. 연구 방법과 내용

- 제주지역의 여성 정치참여를 위한 장애요인과 대안을 찾아보기 위하여 문헌연구와 심층면접 조사를 병행하였음.
- 문헌연구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의 역대선거통계, 정당법,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별 당헌·당규 등을 수집·분석하여 여성의 정치참여 정도를 확인하고, 제주지역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필요한 조건들을 분석함.
- 심층면접조사로는 지방의회에 진출한 비례대표 여성도의원 15명을 대상으로 하여 여성들이 지역구 당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취해야 할 조건들을 조사함.

-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진출한 여성도의원 15명 중 2명은 비례대표 진출 후 지역구 출마 후보자이므로 이 보고서에는 지역구 출마 후보자 입장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장·단점이 반영되어 있음.

3.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

- 이 연구는 지방의회에 진출한 전·현직 비례대표 여성 도의원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으며, 여성정치인이 선거참여 과정에서 경험한 선거제도, 정당의 역할 등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와 정치참여의 여건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15명이라는 소수의 연구대상자를 논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연구의 한계점이라 할 수 있으나 지방의회 진출 여성 의원들의 선거경험을 중심으로 하여 질적 연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따라서 이 연구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해 제주지역의 정치 현황을 점검해 보고, 과제를 도출하는데 연구 의의가 있음.

II. 지방선거와 여성의 정치참여

1.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 여성의 정치참여가 중요한 것은 여성의 권익 향상, 차별과 불평등한 조건을 개선하고 여성의 정치적 권한과 지위를 얻어야 하기 때문임. 여성은 아직도 사회적 소수자이며 자신들의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대상에게 정치적 대표성을 부여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치적 세력화가 필요함.
- 여성의 정치적 세력화란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차별적 환경을 인지하여 권리를 회복하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기 위하여 정치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정치적 세력화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불평등한 조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치 영역에서 능력을 발휘하여 사회적·정치적 지위 확보에 참여하게 됨.
- 여성의 정치적 세력화를 실현하는 방안으로 정치참여가 있음. 여기에는 투표 행위를 통한 간접적인 참여가 있고, 선출직으로 의정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방법이 있고, 여성계 등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여성정책 추진 의지가 있는 후보자와 정당에 투표하는 간접적인 참여방법이 있음.

2. 여성 정치참여의 필요성

- 민주주의 정치 실현으로써 여성의 정치참여
- 여성의 정치적 지위 향상에 따른 역할의 확대

3. 여성 정치참여의 저해요인

- 제도적 요인에는 선거구제, 경선제도, 선거비용, 정당구조 등이 있음.
- 사회문화적 의식구조 요인에는 여성정치인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 정치와 남성의 동일시 등 여성의 정치참여 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음.

4. 국내의 여성 정치참여 현황

-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해 국회,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장과 의원으로 진출하는 방안이 있음. 총선과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여성 후보자들이 당면하는 문제는 대동소이한데, 이는 정당 중심의 공천과 후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임. 따라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정당법을 따라야 하는 지역구 출마 여성 후보들은 공통의 어려움이 있다고 봄.
-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에서 비례대표 50% 여성할당제, 여성 홀수 순번 등 남녀교호순번제, 여성의무공천제와 여성후보추천보조금 관련 규정, 여성정치발전기금 관련 규정 등 법적, 제도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에는 미흡한 편임.
- 국내의 여성 정치참여 비율이 높아진 것은 선거제도의 변화가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봄. 1995년 광역의회에 비례대표직이 도입되면서 여성의원의 정계진출의 실마리가 되었으며, 2002년 이 제도가 개정되면서 여성의 정치참여 기회가 확대되었다고 봄. 그러나 여성의 정치적 세력화를 위한 대표성 확대 방안으로는 지역구 선출직 여성의원 비율이 증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선거문화와 유권자의 의식 변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임.

5. 제주지역의 여성 정치참여 현황

- 우리나라의 정치 환경과 제주지역의 여건이 어느 정도 차이점이 드러나는지는 다각도를 조사하고 연구해야 할 것이나 여기서는 지방선거 결과 드러

난 여성의 정치참여 현황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고자 함. 즉 역대지방선거제도 변화가 제주지역의 정치 환경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며, 이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활용 가능성이 있음.

- 여성 비례대표 후보자수의 경우는 4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06. 05. 31.)에서 전체 후보자 18명 중 여성 후보자수가 10명(55.6%)으로 가장 높았으며, 1회 전국동시지방선거(1995. 06. 27.)에서 전체 후보자 5명 중 여성 후보자수가 1명(20%)으로 가장 낮음을 알 수 있음.
- 여성 비례대표 당선자수의 경우는 4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06. 05. 31.)와 5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0. 06. 02.) 모두 전체 당선자 7명 중 여성이 5명(71.4%)으로 높게 나타남. 1회 전국동시지방선거(1995. 06. 27.), 2회 전국동시지방선거(1998. 06. 04.)에서는 모두 전체 당선자 3명 중 1명(33.3%)으로 남성 당선자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3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02. 05. 31.)는 당선자 3명 중 여성이 2명(66.7%)으로 남성 당선자수보다 높게 나타남.

III. 제주지역 여성정치인의 여성 정치참여 면접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 이 연구는 제주지역의 전·현직 여성정치인을 연구범위로 설정했기 때문에 면접대상자는 전·현직 여성도의원 15명이고, 여성 국회의원 1명은 추가 자료로 활용하였음.
- 면접대상자 15명 중 2명은 2선 의원이어서 중복되므로 면접자는 13명이며, 이 중 응답이 어려운 2명을 제외하고 11명이 응답한 설문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했음.
- 자료 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연구자가 여성정치인을 방문하여, 직접(face-to-face) 면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 이메일로 사전에 설문지를 발송하여 내용을 확인하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배정했음. 개인사정으로 정해진 기간에 직접 면접이 불가능한 경우 사전 양해 하에 이메일로 응답하여 주도록 요청하는 방식을 병행 사용하였음.
- 자료 수집은 2011년 7월~8월 중순까지 진행되었음.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제주지역 광역의원·국회의원 비례대표 여성 당선자

선거	소속정당명	당선자	비고
1995년 (5대) 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한나라당	고앵자	
1998년 (6대) 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새정치국민회의	임기욱	
2002년 (7대)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새천년민주당	임기욱	
	한나라당	김영희	
2006년 (8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민주당	방문추	17대(2004년) 비례대표 국회의원 민주노동당 현애자
	열린우리당	오옥만	
	민주당	오정희(보궐)	
	한나라당	김순효	
	한나라당	김미자	
	민주노동당	김혜자	
2010년 (9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한나라당	현정화	
	한나라당	이선화	
	민주당	방문추	
	민주노동당	김영심	
	국민참여당	박주희	

- 비례대표로 당선된 여성도의원은 1995년 1명, 1998년 1명, 2002년 2명, 2006년 5명(2009년 민주당 오옥만 의원의 사퇴로, 오정희 의원이 의원직 승계), 2010년 5명임.
- 제주특별자치도 8대 여성도의원 연령대는(2006년 당선 당시) 30대 1명, 40대 1명, 50대 2명, 60대 1명임. 9대 여성도의원 연령대는(2010년 당선 당시) 30대 2명, 40대 2명, 50대 1명으로 구분됨.

3. 제주지역 여성의 정치참여

가. 제주지역 여성의 정치참여 현황 인식

- 여성의 정치참여가 과거에 비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응답을 보면 과거에 비해 정치참여가 매우 높아졌다 6명(55%),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 3명(27%), 그저 그렇다 2명(18%) 순으로 응답함.

나.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요인 여부

1) 긍정적 요인 응답 내용

- 17대 총선 관련 정당법 개정을 통해 비례대표 50%, 지역구 30% 등으로 남성 중심의 보수적 정치요인들을 개선함으로써 여성들의 정치적 참여 활동을 높임.
- 과거에 비해 여성들의 정치참여 의식이 높아짐.
- 여성의 정치참여도가 높아진 지역이 많아짐.
- 정당의 비례대표제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당원으로서 오랫동안 봉사활동 등을 통해서 정치활동을 했던 여성들이 비례대표로 정계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고 보았음.
- 제도적으로 개선된 분야는 여성 투표율을 높이는데 기여함.
- 정당 중심으로 여성의 정치참여율을 높이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옴.
- 비례대표제와 여성의무할당제 등 제도적 개선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식 변화가 보임.

2) 부정적 요인 응답 내용

- 제주지역에서 여성들의 정치참여 환경에 대한 부정적 요인은 대략 '다른 지역에 비해 제주지역이 보수적임. 유교적 이념이 강함. 선진국에 비해 여성의 권리가 낮음. 정치를 남성의 영역으로 생각함.' 등이 제기됨.

4. 정당적 관점

가. 여성 정치참여와 정당의 역할

- 여성의 정치참여를 높이는데 정당의 역할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명(9%), 역할이 높다 5명(45.5%), 그저 그렇다 5명(45.5%) 순으로 응답했으며, 정당의 역할이 낮다는 응답은 전무함.

나. 정당의 역할론

- 비례대표 할당제와 지역구 여성의무공천제가 시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 정당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다. 제주도당의 역할

-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높이는데 제주도당의 기여도와 역할 조사 결과 1명(9.1%)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었다고 응답하였고, 2명(18.2%)이 중요한 역할을 하었다고 응답함. 4명(36.4%)은 그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4명(36.4%)은 별 역할이 없었다고 응답하였음.

라. 제주도당의 역할 한계점

- 정당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고위직은 남성이 독차지하거나 여성당원들의 참여가 아주 제한적 적이어서 여성의 정치적인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음.
- 제주도당에서는 여성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안하지 못함으로써 여성당원은 물론 유권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음.

마. 정당이 시급해 개선해야 할 점

- 전문적인 여성지도자 발굴·양성과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 관련 정책이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함.
- 지역 선거구에서 당선 가능성이 있거나 우세 지역에서 여성공천 의무화가 제도화 되어야 함.

- 여성당원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참여 계획과 지속적인 프로그램 관리가 필요하며 정당별로 배정되는 여성정치발전기금을 여성위원회 사업에 우선 배정해야 함.
- 여성정치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정치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함.

바. 정당이 추구해야 할 단기 목표

- 여성조직 강화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전문성과 헌신성을 갖춘 여성인재 발굴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음. 또한 여성위원회 워크숍, 아카데미 운영, 능력개발 및 자질 향상을 추진해야 하며, 여성단체와 정책간담회 운영에 주력하고, 여성 관련 위원회와 대화를 통해 제주도당과 각 위원회의 의견 조율 등을 단기 목표로 제시하였음.

사. 정당이 추구해야 할 장기 목표

- 장기 목표로는 가정생활과 병행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정치아카데미를 시행해야 하고, 여성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참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주는 것을 들고 있음.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여성들의 일자리 확대 방안을 제안하였음.
- 이외에도 여성정치인을 위한 별도의 선거자금 지원과 다양한 선거제도의 개선을 정당의 장기 목표로 제시하였음.

5. 법·제도적 개선

-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법·제도 개선 여부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 매우 그렇다 3명(27.3%), 그렇다 3명(27.3%), 그저 그렇다 5명(45.5%) 순으로 나타남.

6.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으로 비례대표 여성할당제에 대한 응답을 보면 10명(90.9%)이 아주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1명(9.1%)은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어서 결국 이 제도에 대한 긍정 비율은 100%로 나타남.

- 비례대표 여성할당제도로 제주지역에서는 7대에 2명이던 여성의원이 8대, 9대에 각각 5명으로 증가하였음.

7. 지역별 정당의 여성 의무공천제

- 제주지역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으로 여성 의무공천제를 묻는 질문에 매우 중요하다 10명(90.9%), 중요하다 1명(9.1%)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11명(100%)으로 나타남.

8. 사회문화적 관점

여성의 정치참여에 따른 사회문화적 관점의 참여제약 요인은 다음과 같이 조사됨.

- 여성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 부족
- 남성중심의 문화환경
- 여성정치인에 대한 가족들의 낮은 지지와 호응도
- 여성정치인에 대한 소극적인 신뢰도
- 분야별 전문적인 여성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낮은 인지도
- 혈연·지연·학연에 약한 연고성
- 여성유권자의 정치적 무관심
- 선거비용 등 자금력 확보의 한계

9. 분석 결과 시사점

- 여성의 정치참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 정당차원에서 여성의 정치참여에 기여한 역할이 미미한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정당차원의 개선노력이 보강될 필요가 있음.
- 여성정치아카데미는 여성정치지도자 양성을 위한 기초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과정의 심화를 통해 전문적 여성정치인을 양성하여 대안적 여성정치지도자를 배출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음.

IV.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

1. 정당별 당헌·당규를 통해본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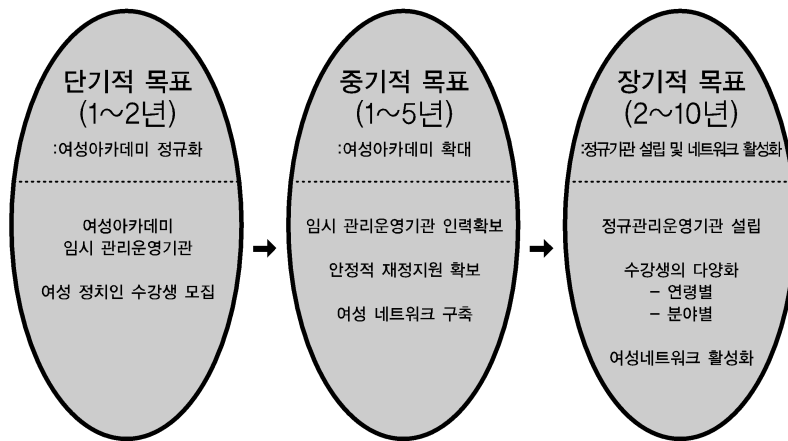
- 제주지역에서 비례대표 여성도의원을 배출한 4개 정당(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의 당헌과 당규를 중심으로 하여 여성당원들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한 노력 정도를 살펴보았음. 법·제도적으로는 여성당원들의 적극적 참여방안이 완벽하게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시행여부는 정당에 따라 다르므로 정당 차원에서 제도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필요함.
- 제주지역의 여성 정치참여 활성화 방안으로 정당의 제도를 논의한 것은 정당의 역할에 따라 시·도당으로 전파될 것이라 보기 때문임.
- 결국 여성의 정치참여가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 때까지 여성들을 위한 당헌·당규에 권고사항이 아니라 강제조항을 신설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임.
- 여성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여성의 역량강화, 유권자의 인식 변화, 제도개선 등은 필요충분조건이며, 이에 더하여 여성당원들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당의 역할이 중요함이 드러남.
- 정당정치를 표방하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여성의 정치참여 방안은 정당이 해법을 갖고 있음. 정당의 모든 조직에 여성당직자를 임명하여 여성의 지도력을 강화하고, 여성 정치인을 발굴하고 양성하는 방안 있음.
- 여성정치발전기금은 반드시 목적 사업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여성추천보조금 등은 여성후보의 선거자금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선거운동에 필요한 조직활동비로 사용하도록 강제규정이 시행된다면 여성의 정치참여는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임.

2. 제주지역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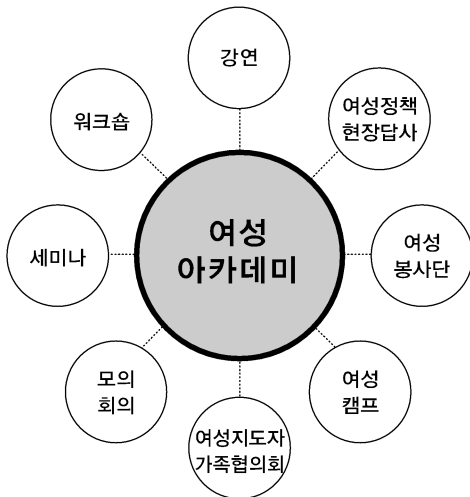
- 여성 네트워크 구축과 활용
- 각급 선거 시 여성 후보자를 위한 재정적 지원
- 정당(제주도당)의 실질적 지원
- 여성계의 지각과 단결
- 법·제도의 개선

3. 여성 정치지도자 양성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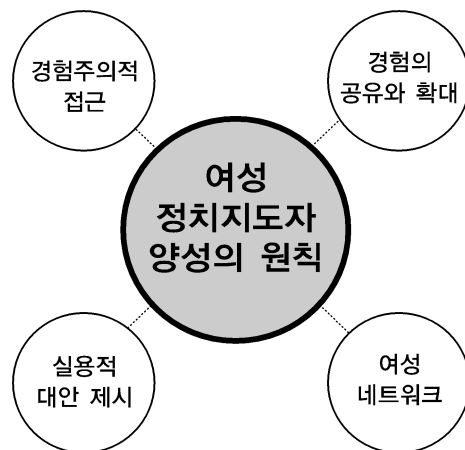
-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정치훈련과정이 필요함. 즉 정당별로 여성당원을 위한 교육과 유권자 등 시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정치적인 요인들을 전파하는 역할이 필요함. 정당은 예비 여성정치인 양성을 위해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특히 여성당원 교육에 역점을 두는 것이 필요함.



<그림 1> 여성 아카데미 운영 목표



<그림 2> 여성아카데미 교육 방법



<그림 3> 여성정치지도자 양성 원칙

V. 결론 및 향후 과제

1. 결론

1)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필요

- 남성중심의 정치문화, 여성과 정치의 관련성에 대한 고정관념 등으로 여전히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노력은 만족할 만한 성과를 가져오고 있지 못함. 또한 선거구 범위가 넓어지고 선거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자금력·조직력에서 취약한 여성들이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해결과제임.
- 제도적인 측면이 여성의 정치참여를 저해하고 있으며, 현재의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여전히 여성의 정치참여 유도를 할 수 없음. 따라서 중대선거구제의 도입이 필요하며 중대선거구제에서 여성의 당선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음.

2) 비례대표 여성할당제의 확대와 여성의무공천제 추진

- 현재 전체 지역구 대비 여성의원의 진출이 매우 저조함을 감안할 때 지역구의 여성의원 비율이 일정한 수준에 이를 때까지 비례대표직의 여성비율을 상향조정해야 할 것임.

3) 정당제도의 개혁과 정당 내 민주주의 확보

- 당선 가능한 지역에 여성을 30% 이상 공천하고 비례대표직에서는 유권자 성비에 따른 균등한 할당제 공천이 요구되며 여성후보자 선거지원 활동을 대폭 강화 등 당내 민주주의 확보가 필요함.

4) 사회전반의 의식개혁 필요

- 여성문제의 해결은 소수 여성단체만의 노력으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먼저 여성 스스로의 각성을 통해 참다운 자기를 찾는 의식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분산된 여성의 힘을 효과적으로 조직화하여 여러 통로에 있어서 정치참여의 폭을 넓혀야 함.

5) 여성 정치지도자 양성 필요

- 여성 정치지도자 관련 교육프로그램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의 현실화, 여성아카데미 설립 추진에 대한 정치적 지원 현실화, 여성 정치인들의 참여의지, 교육과정의 만족도, 여성아카데미를 초당적·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구 선정, 교육대상자 발굴 및 참여 유도 정책의 현실화 등을 들 수 있음.

2. 향후 과제

1) 제주지역 여성의 정치참여 여건 조성

- 비례대표직 여성의원들은 차후 지역구로 출마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역구 관리와 선거출마에 대비하여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

2)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해 정당과 제주도당의 역할 강화

-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으로 ‘법·제도적 개선, 비례대표여성할당제, 여성의무공천제, 사회문화적여건 성숙’ 등이 갖추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당과 제주도당의 의무가 중요함.

3) 법·제도적 개선

-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적어도 선출직 30% 여성공천 할당제가 강제조항이 되어야 하며, 여성당원들이 자신들의 정당에 요구해야 하고, 여성계에서도 압력을 가해야 함.

4) 여성의 정치·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지속적 관리

- 차세대 여성지도자 양성에 인적·물적 지원제도가 필요함.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적어도 제주지역의 10~20대 대상 청년들의 정치참여 계기를 마련해 주고 여성들의 정치참여 유도를 위한 강좌를 개발 운영함. 이를 위해 제주지역 대학, 시민단체, 언론계 등이 공동으로 강좌 운영이 가능하도록 공동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5) 중·대선거구제 채택

- 단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는 여성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함. 이는 우리의 경우 정당정치에 있어서 여성은 정당의 공천을 받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성들에게 당선 가능한 선거구보다 당선이 희박하거나 상징적 의미의 여성참여를 내세우기 위해 여성을 할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6) 지역사회와 여성계의 역할 강화

- 제주지역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사회와 여성계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여성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선거전략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 정당활동 참여와 공천 확보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충분한 준비기간 마련을 유도하고, 지원해 줌. 또한 제주지역의 다양한 사회활동과 적극적 참여를 통해 인지도 확보 기회를 제공해 주는 방안이 있음.

목 차

I. 서 론	1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1
2. 연구 방법과 내용	2
3.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	3
II. 지방선거와 여성의 정치참여	5
1.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5
2. 여성 정치참여의 필요성	6
3. 여성 정치참여의 저해요인	8
4. 국내의 여성 정치참여 현황	11
5. 제주지역의 여성 정치참여 현황	17
III. 제주지역 여성정치인의 여성 정치참여 의견조사	72
1. 조사개요	27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8
3. 제주지역 여성의 정치참여	29
4. 정당적 관점	32
5. 법·제도적 개선	40
6.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42
7. 지역별 정당 여성의무공천제	44
8. 사회문화적 관점	46
9. 분석 결과 시사점	49
IV.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	5
1. 정당별 당헌·당규를 통해본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	51
2. 제주지역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	53
3. 여성 정치지도자 양성 방안	57

V. 결론 및 향후 과제	68
1. 결 론	68
2. 향후 과제	71
참고문헌	76
<Abstract>	87
<부록 1> 설문지	18
<부록 2> 정당별 여성 관련 당헌·당규 발취	68

<표 목차>

<표 1>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 전국 정당별 후보자수 ...	41
<표 2>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 성별 전국 당선자수 ...	51
<표 3> 역대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의원 비례대표 여성후보자·당선자 수	6
<표 4> 역대 지방선거 제도변화	7
<표 5> 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원 투표인수 비교	8
<표 6>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선거 투표인수 비교	9
<표 7> 국회의원 입후보 비교	0
<표 8> 국회의원 당선자 비교	1
<표 9> 도의회 의원 입후보 당선자 비교	1
<표 10> 역대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의원 비례대표 여성후보·당선자 현황	2
<표 11> 2010년 제주지역 광역의원 지역구 후보자·당선자 수	32
<표 12>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별 지역구 여성후보 공천자·당선자 수	42
<표 13>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지역 광역의원 정당별 후보자수	52
<표 14>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지역 광역의원 정당별 당선자수	52
<표 15> 심층 면접 내용	7
<표 16> 제주지역 광역의원·국회의원 비례대표 여성 당선자	8
<표 17> 제주지역 여성의 정치참여 현황 인식	9
<표 18>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정당의 역할	23
<표 19> 제주도당의 역할	53
<표 20> 법·제도 개선의 필요 여부	04
<표 21> 여성권한척도(GEM)가 높은 국가별 선거제도 비교	14
<표 22>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24
<표 23> 지역별 정당의 여성의무공천제도	44
<표 24> 정당별 제주도당 여성 정치 아카데미 운영 현황	85
<표 25> 여성대학 운영 현황	95

<그림 목차>

<그림 1> 여성아카데미 운영 목표	3
<그림 2> 여성아카데미 교육 방법	4
<그림 3> 여성정치지도자 양성 원칙	5

I. 서 론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수립과 동시에 남녀 공히 참정권이 부여되었으나 투표행위를 통한 정치참여 정도로 출발하여 1990년대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되면서 정계 진출을 시도하는 정치참여 형태가 본격화되었다고 봄.
- 여성의 정치참여가 중요한 것은 여성의 권익 향상, 차별과 불평등한 조건을 개선하고 여성의 정치적 권한과 지위를 얻어야 하기 때문임. 여성은 아직도 사회적 소수자이며 자신들의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대상에게 정치적 대표성을 부여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치적 세력화가 필요함.
-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려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가 필요하며,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음. 하나는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한 일반여성들의 정치참여로 이는 투표에 의한 정치행동을 의미함. 두 번째는 여성 대표의 의회진출을 통한 실질적 대표성 확보로 입후보를 통한 정치참여 방법이 있음.
-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제도의 개선, 여성의 정치역량 강화, 정당의 역할, 사회문화적 여건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며, 정당별로 여성 후보자 등 인재발굴과 양성 의지, 여성 후보자에 대한 공천 지역 선정 등 여러 요인들을 간접적으로 추출해 보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진출한 비례대표 여성도의원을 심층 면접하여 문제점과 대안을 도출하고자 함.
- 여성 정치인들은 오랫동안 유권자로서, 정당인으로서 여성의 정치 세력화에 동참해 왔으며, 정계진출을 통해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치문화의 변화 요인 등을 확인하고, 비례대표 여성도의원들의 정치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향후 제주지역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또한 전국적으로 여성들의 사회참여 의식이 높아지면서 제주여성들의 정치의식도 향상되고 있지만 결과는 미미하므로 그 원인을 진단해 보고 향후 제주여성 정치인 양성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 이에 제주지역의 정치적인 상황은 여성들의 정치참여나 여성리더십을 강화시키는 데 구조적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음. 여성들의 의회 진출과 여성의 정치지도자 양성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을 분석해 보고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봄.

2. 연구 방법과 내용

가. 방법

- 이 연구를 위해 문헌연구, 심층면접 조사 등의 방법을 선택하였음.

1) 문헌연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의 역대선거통계, 정당법,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별 당헌·당규 등을 수집·분석하여 여성 정치참여 정도를 확인하고, 제주지역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필요한 요건들을 분석하고자 함.

2) 심층면접조사

- 제주지역의 전·현직 여성 도의원 15명을 대상으로 하여, 심층면접조사를 추진하였으나, 2명은 2선 의원이고, 2명은 개인사정으로 응답하지 못해서 최종 11명만을 조사하였음. 응답자의 일정에 따라 7월부터 8월 중순까지 진행되었음.
-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진출한 여성도의원 15명 중 2명은 비례대표 진출 후 지역구 출마 후보자이므로 이 보고서에는 지역구 출마 후보자 입장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장·단점이 반영되어 있음.
-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 관련 연구는 주로 국회의원 선거 중심으로 논의되었는데, 이는 법·제도적 여건이 정당중심으로 행해지는 것이며, 중앙당차원에서 여성비율이 높아지면 지역정당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봄. 이에 정당법 개정, 비례대표제 확대, 여성의무공천제 등은 국회와 지방의회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고 ‘제주지역 여성의 정치참여, 정당적 관점, 법·제도적 개선, 비례대표여성할당제, 지역별 정당 여성의무공천제, 사회문화적 관점 등을 중심으로 하여 조사하였음.

나. 연구범위와 내용

- 제주지역의 여성 정치참여 확대 방안을 도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음.

- 지방의회 진출 비례대표 여성 도의원 대상 면접조사
 - 지역구 출마 여성 후보자 대상 면접조사
 - 정당별 제주도당 당직자 대상 면접조사
 - 남성 도의원 및 후보자 대상 면접조사
- 이와 같이 4단계 조사 방법을 설정할 수 있으며, 4가지 방법을 동시에 적용하는 방안도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1차적으로 지방의회 진출 비례대표 여성 도의원만을 논의 대상으로 하여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향후 중장기연구계획을 통해 연구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따라서 단계적인 연구 결과물을 기초로 하여 제주지역 여성의 정치적 충원을 통해 여성의 정치참여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 연구 내용을 소개하면 2장에서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과 여성 정치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여성권한척도의 지표인 여성의원 비율을 알 수 있는 국내의 여성 정치참여 현황을 논의한 후 이런 현상이 제주지역의 정치 현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 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하여 다루고자 함.
- 3장은 이 연구보고서의 본론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6개 영역-제주지역 여성의 정치참여, 정당적 관점, 법·제도적 개선,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지역별 정당 여성의무공천제, 사회문화적 관점-에 해당하는 조사 결과를 정리하였음.
- 4장에서는 3장의 면접조사를 종합하여 여성정치지도자 양성방안을 다루었음. 특히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과 지도자 육성을 위한 아카데미운영 전반을 제안하였으며, 정치 지망생들의 개인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당별 당헌·당규를 통해서 여성당원들의 정치적 입지를 넓힐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고자 했음.
- 5장에서는 본문에서 다룬 내용을 정리하고, 향후 과제로 '제주지역 여성의 정치참여 여건 조성,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해 정당과 제주도당의 역할 강화, 법·제도의 개선, 여성의 정치·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지속적 관리, 중·대선거구제 채택, 지역사회와 여성계의 역할 강화'등을 제안하고자 함.

3.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

-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은 주로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당선자 중심으로 연

구되어 왔으며, 여성의 정치 세력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의무할당제, 의무공천제 등 법·제도 개선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여기에 정당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국가 차원의 선거제도가 제주지역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시도해 보았음.

- 제주지역에서는 주로 지방선거, 대선, 총선 등 각급 선거에 대비해서 선거일 기준 1~2년에 여성유권자 의식이나 여성 출마자 독려를 위한 한시적 토론회 혹은 세미나 개최로 그치고 있어 종합적 연구가 미진한 편임. 또한 제주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정치아카데미, 여성대학’ 등이 비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여성의 의회진출 확대에 필요한 정치적, 사회·문화적, 제도적 요인 등을 깊이 있게 조사한 선행 연구가 부족한 편임. 아울러 제주지역 실정과 제주여성의 의식을 고려한 정치지도자 양성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는 실태조사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이 연구는 지방의회에 진출한 전·현직 비례대표 여성 도의원과 국회의원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으며, 여성정치인이 선거참여 과정에서 경험한 장·단점을 알아보고,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정치참여의 여건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이 연구를 통해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직접적인 정치참여제도가 제정되었으나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를 확인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으며, 제주지역의 정치적인 여건을 파악하려는 연구 목적에 맞게 지방의회 진출 비례대표 여성도의원만을 조사 대상으로 삼아서 부분적인 의견을 정리한 한계가 있음.
- 15명이라는 소수의 대상자를 논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지방의회 진출 여성 의원들의 선거경험을 중심으로 하여 질적 연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범위와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토대가 됨.
- 따라서 이 연구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에 해당되며, 이러한 관점에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해 제주지역의 정치현황을 점검해 보고, 과제를 도출하는데 연구 의의를 두고자 함.
- 또한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제고해 보고, 향후 여성정치 후보자와 정당인, 남성 정치인들의 의견 수렴 등 지속적인 연구의 주제로 삼고자 함.

Ⅱ. 지방선거와 여성의 정치참여

1.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 세계적으로 여성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한 시기는 국가마다 다르며, 참정권은 여성들이 자율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임.
- 여성의 정치적 세력화란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차별적 환경을 인지하여 권리를 회복하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기 위하여 정치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정치적 세력화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불평등한 조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치 영역에서 능력을 발휘하여 사회적·정치적 지위 확보에 참여하게 됨.
- 여성의 정치적 세력화를 실현하는 방안으로 정치참여가 있음. 여기에는 투표 행위를 통한 간접적인 참여가 있고, 선출직으로 의정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방법이 있고, 여성계 등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여성정책 추진 의지가 있는 후보자와 정당에 투표하는 간접적인 참여방법이 있음.
- 여성의 직접적인 정치참여는 여성정책 결정에 여성의 힘으로 실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이를 위해 여성들의 정계진출 확대가 중요하다고 봄.
- 정계에 진출한 남성의원들의 자리에 여성들의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을 제·개정하면서 비례대표 할당제, 여성의무공천제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이러한 법·제도적 개선이 수반되어야 함.
- 2002년 지역구 선출직 여성후보의 정당공천 30%는 권고사항이었는데 2010년 선거에서 강제조항으로 바뀌면서 정당에서는 이를 지키는데 급급하여 여성 후보자 배출에만 고민하고, 당선 가능성은 크게 고민하지 않았다고 봄. 이 제도의 단점은 2010년 6·2 지방선거 전후에 문제가 드러났으며 이를 보완하지 않으면 오히려 여성의 정치참여에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음. 향후 이 제도가 개정되어서 여성 후보자들이 남성 후보자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조성이 중요함.
- 우리나라 여성들의 정계진출을 통한 직·간접적인 정치참여로는 18대 국회의원 299명 중 여성 국회의원은 41명(13.7%)으로 정치적 대표성 확대 방안이 필

요하다고 봄. 이를 다시 보면 지역구 245명 중 여성의원은 14명(5.7%)이고, 비례대표 54명 중 여성의원은 27명(50%)으로 비례대표할당제가 없으면 아직도 여성의 국회진출은 요원해 보임.

- 5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0년)에서 광역자치단체장 16명 중 여성은 0명이고, 기초자치단체장은 228명 중 여성이 6명(2.6%)임. 또한 광역의원 당선자 680명 중 여성당선자는 55명(8.1%)으로 선출직 여성 정치인들의 당선 비율은 10% 미만임. 이러한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의 성평등지수는 아주 낮은 결과에 이름.
- 성평등지수란 성평등의 목적, 방향, 기준 등을 나타내는 표지이며, 성평등수준 향상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 특정 국가의 성평등과 관련한 장점과 약점, 관련 정책 및 제도의 평가 등을 가능하게 함.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여성가족부에서 한국성평등지수를 개발하였으며, 이는 남녀격차를 측정기준으로 삼고 있음. UNDP는 2010년까지 성평등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남녀평등지수(GDI)와 여성권한척도(GEM)를 활용했으며, 이 지수들은 지표의 격차와 수준을 고려하여 성평등 수준을 산정했음. 성평등지수에서 여성의원 비율은 정치적 대표성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이므로 한국의 성평등지수 측정 도구로 여성의원 비율은 중요하게 작용함(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참조).

2. 여성 정치참여의 필요성

- 여성 정치인수를 논할 때 정치인수(비율)로 만족할 것은 아니지만 개척분야에서는 수요도 중요하게 작용함. 우리나라의 각급 선거 시에 여성정책이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이를 정치적으로 채택하도록 하려면 이를 결정하고 도와줄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있어야 하며, 그 중심에 여성정치인이 중요한 몫을 담당할 수 있음. 또한 여성의 정치참여가 확대되면 투명하고 공정한 정책 결정과 추진이 이루어지고, 부패 정도가 감소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있음. 이 기대가 현실로 증명될 수 있도록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함.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비례대표 할당제, 여성의무공천제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정당별 실천의지에 달려 있다고 봄.
- 여성의 정치참여가 왜 중요하고, 필요한지에 대한 이견이 공존하고 있으나,

이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 수립과 집행에 관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중요하기 때문임.

-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는 성주류화 정책 시행의 기초에 해당하며, 여성이 주도적으로 여성정책에 참여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정책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함. 이 결과 제주지역의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것임.
- 여성의 정치참여는 여성이 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는 무력한 존재로 머물고 있음. 정치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제한되어 있다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었으며, 여성의 정책결정 참여 문제는 하나의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음(한승주, 2002).
- 여성의 정치참여가 필요한 것은 우선 여성의 정치참여는 궁극적으로 자유와 평등의 정의가 보장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함이며, 다음으로는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에 따른 사회적 지위향상과 역할 확대라 할 수 있음.

가. 민주주의 정치 실현으로써 여성의 정치참여

- 현대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념이자 원리는 민주주의라 할 수 있고, 민주주의 이념과 원리는 자유와 평등사상, 인권존중사상, 주권재민사상, 기회의 균등, 다수결의 원칙과 소수권리 존중 원칙 등을 들 수 있음(이범준·신승권, 1996). 민주주의란 정치권력의 주체는 국민이며, 정부의 구성은 피지배자의 동의에 이루어져야 만이 합법적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정치에 있어 여성참여의 배제는 정치적 대표성의 평등사상과 기회균등의 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인간존중사상이라는 민주주의 이념에도 위배되는 문제임. 현대 민주주의는 대의정치라고 표현할 수 있고 대의정치의 정통성은 국민의 대표성에서 찾을 수 있음.
- 오늘날 민주정치는 국민의 정치참여를 보장하여 대표자를 선출하고 이들이 다수국민의 의사에 따른 정치를 하도록 하는데 그 본질이 있는 것임(최종두, 1985). 또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중앙집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조직과 재원을 갖추고 지역의 공공사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단체자치’의 실현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핵심적 목표가 되었음(유재원, 2003). 지방자치가 최고의 민주주의 학습장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능동적인 참

여가 반드시 요구되며, 주민의 참여는 정책수립 과정이나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

- 대의제 민주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 한 “단순히 후보를 선출하는 수동적 행위자가 아니라 직접적인 대표로서 정치에 참여하여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음. 그뿐만 아니라 국가적 측면에서도 직업별, 연령별, 성별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이 진정한 대의제 민주주의 구현에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된다.”(국영애, 2006:265)는 점에서 여성의 정치참여가 중요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음.

나. 여성의 정치적 지위 향상에 따른 역할의 확대

- 우리나라에서는 산업화 이후 핵가족화로 자녀수가 감소하고 교육기회의 확장에 따라 여성들도 정치평등, 사회평등, 경제평등 등 인간의 자유와 평등에 관심을 갖게 되었음. 여성들은 자아실현의 방편으로 취업을 통해 자아실현과 사회적 활동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폭되고 있으나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은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실정임.
- 세계적으로 여성들은 법적·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보임. 즉 “세계화 시대를 맞아 세계의 각 국가들은 무한 경쟁체제로 돌입하여 치열한 경제 전쟁을 치르고 있음. 국력은 곧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것으로 국력의 기초가 되는 것은 자본과 노동력의 양과 질이라 볼 수 있음. 특히 오늘날과 같은 정보사회 또는 지식기반경제에서는 국가경쟁력의 근원이 사람이라면 당연히 인류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도 국가경쟁력의 원천을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유공순, 2002:83)라는 사실을 보더라도 여성의 정치적 지위가 향상되어야 국가의 경쟁력도 강화된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음.

3. 여성 정치참여의 저해요인

- 여성 정치참여의 저해요인으로는 크게 제도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의식구조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제도적 요인으로는 선거구제, 경선제도, 선거비용, 정당구조 등이 있음. 사회문화적 의식구조 요인은 남성중심의 권위주의적인 정치문화 속에서 여성에 대한 편견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음.
- 이에 여기에서는 여성 정치인 등이 이러한 저해요인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개선점은 무엇인가 등을 분석해 보고자 함.

가. 제도적 요인

- 여성의 정치참여를 저해하는 제도적 요인은 첫째, 선거자금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음. 우리나라는 선거비용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이 들고 있으며, 조직과 자금은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생겨나게 되었음. 한국사회에 있어서 여성의 경제적 접근이 어려운 현실에서 남성들과의 경쟁력을 갖추는데 어려운 한계점이 있음(손봉숙·박의경, 1999).

1) 선거구제

- 현행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의원선거 등 1인 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소선거구제는 여성의 원내 진출에 심각한 장애로 작용함. 소선거구제는 선거방식이 쉽고 간단하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대표성, 공정성, 흥미성 등의 부문에 있어 문제가 있는 제도라 할 수 있음(엄태석, 2002:103).
- 따라서 여성들은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상대방 후보가 강한 지역과 당선될 가능성이 없는 지역에 공천을 받는 경우가 많음.

2) 경선제도

- 당내의 인맥과 인간관계로 투표의 향배가 결정되는 경선제도가 조직, 인맥, 기금에 약한 여성 후보자들에게는 장애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음(이영애, 2001:81~83).
- 따라서 정당을 통한 조직활동에서 여성은 남성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정당체계에서 열세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경선제도에서 여성이 남성을 이길 수 없는 장애요인에 해당됨.

3) 선거비용

- 여성후보자들은 독자적인 사업을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적극적인 지원이 없으면 선거비용조달에 어려움이 있으며, 선거비용을 마련하더라도 그 한계가 뚜렷함. 따라서 개인적인 면에서 선거비용의 어려움과 더불어 정당체제 내에서의 어려움이 결부되어 더욱 정치입문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박홍식, 1996).
- 현행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기 때문에 정당의 지원 없이는 선거비용뿐만 아니라 당선이 된다 하여도 비용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선거비용은 여성의 정치참여에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4) 정당구조

- 우리나라 정당 내 여성 당직자수가 적고 소수의 여성당직자들이 주로 여성관련 위원회에 배치되어 있는 이유로는 정치를 남성 영역으로 간주하는 우리사회의 여성 배타적인 정치문화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득권을 가진 남성 정치지도자들이 비중 있는 당직에 여성당직자를 배치하는 데 소극적인 자세 등이 있음(김원홍·김혜영·김은경, 2000:11).
- 그러나 민주노동당의 경우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 한해 투표권을 주고 있으며, 집행위원회 위원의 선출은 우선 30% 의석은 여성에게 배정하며, 나머지 70%의 의석은 떨어진 여성까지 포함하여 남녀후보가 함께 경선하여 위원을 선출하고 있음(라미경, 2005:224). 반면 대부분의 정당에서는 여성 당직자들이 하위 직급이나 봉사활동 영역에 치우치고 있는 실정임.

나. 사회문화적 의식구조 요인

- 우리나라는 헌법에 명시된 남녀평등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남성중심의 권위주의적인 정치문화 속에서 여성에 대한 편견은 정치영역에서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 왔음(박홍식, 1996).
- 한국의 전통적 여성관은 여성의 활동 범위를 가정으로 한정시키고 있으며, 권력의 배타적 특성상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지위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유교적 사고가 잔재해 있고, 여성의 사회참여는 사회적 인습의 높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음(이영애, 2002:80~81).

- 따라서 여성들은 투표를 통한 정치참여과정에서도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후보자 선택시 자신의 의지에 따라 결정하기보다는 혈연·지연 등 남성중심 문화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봄.

4. 국내의 여성 정치참여 현황

- 우리나라에서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되면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했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 따라서 여성들의 지방의회 참여 방안을 확대하기 위하여 1995년 광역의회에 비례대표직이 설치되면서 여성의원 비율이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2002년 3월 ‘비례대표제’가 개정되면서 여성의 대표성 제고가 물꼬를 트기 시작했음.
- 이 제도는 2005년 8월 비례대표 50%를 여성으로 추천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홀수번호를 여성후보에게 부여하도록 제도를 강화하였으며, 이 결과 여성의원들의 정치참여 확대에 기여함.
- 비례대표제는 분야별 전문가의 의회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을 위한 진정한 의미의 의정활동 요구를 위한 제도임. 여성의 정치참여가 높은 국가들은 대체로 비례대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여성의 대표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음. 따라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서 비례대표제를 보완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시행하는 것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에 일정부분 기여도가 있다고 봄.
-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해 국회,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장과 의원으로 진출하는 방안이 있음. 총선과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여성 후보자들이 당면하는 문제는 대동소이한데, 이는 정당 중심의 공천과 후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임. 따라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정당법을 따라야 하는 지역구 출마 여성 후보들은 공통의 어려움이 있다고 봄. 즉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에서 비례대표 50% 여성할당제, 여성 홀수 순번 등 남녀교호순번제, 여성의무공천제와 여성후보추천보조금 관련 규정, 여성정치발전기금 관련 규정 등 법적, 제도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에는 미흡한 편임.

- 김민정(2011:6~13)에 의하면 18대 선거(2008년) 결과 할당제를 지키지 않은 정 당에 대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국회의원 지역구의 경우 공직선 거법에는 지역구 여성의원 할당 30%가 권고조항이나 이를 성실하게 수행한 정당은 하나밖에 없고, 국회의원 비례대표인 경우 정당명부의 50% 여성할당 의무화와 흡수 순번 부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역시 이 조항 이행여부에 대 한 강제 조항이 없음. 따라서 권고규정을 강제규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대안 으로 제시하고 있음. 이 외에도 공천과정의 문제점으로 여성할당제와 경선제 도의 개선을 들고 있으며, 공천심사위원회의 공정성 등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이 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여성후보에 대한 정당의 지원이 중 요하다는 것은 각 선거마다 부각되는 요인임.
- 결국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장기적인 과제로는 여성인재풀의 확대와 여성정치인 양성이라 보는데, 이 과제는 정당들의 몫이기도 하지만 여성계와 일반시민들도 유권자로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를 위해 요구해야 함. 따 라서 정당은 정당대로, 여성계는 여성계대로 여성정치인 양성을 위한 교육과 정 운영, 여성정치인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을 줄 수 있는 발전 전략이 필요함. 또한 여성후보자에 대한 지원 강화(선거자금, 선거운동)가 병행되어야 함.
- 이와 같은 국내의 여성 정치참여 여건을 감안해서 2010년 지방선거 현황을 중심으로 하여 여성의 정치참여 정도를 비교해 보고자 함.
- <표 1>에서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 전국 정당별 후보자수를 살펴보면 전국 266명 중 경기도가 35명(13.2%)명으로 가장 많았 고, 울산광역시는 전체 9명(3.4%)으로 전국 16개시도 중 가장 낮게 나타남.
- 전국 여성 후보자수를 살펴보면 전국 광역의원 비례대표 266명 중 179명으로 전체의 6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179명 중 서울특별시가 20명(11.2%)으로 가장 많음. 반면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강 원도, 전라북도가 각각 8명(4.5%)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정당별로는 '사회당'이 비례대표 후보자 16명 중 여성이 16명(100%)으로 가 장 높게 나타나고 다음으로 '평화 민주당'이 비례대표 후보자 9명 중 여성이 8명(88.9%)으로 높게 나타났음. 반면에 '자유선진당'은 비례대표 후보자 16 명 중 여성이 9명(56.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전체 여성후보자 179명 중 '한나라당'이 47명(2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민주당' 31명(17.3%), 민주노동당 22명(12.3%)로 나타났음.

- 반면에 '창조한국당'과 '국민중심연합'은 여성 후보자가 한 명도 없으며, '친박연합'이 5명(2.8%)으로 낮게 나타남.
- 이는 여성 후보자수가 정당의 규모에 따라 그 수가 달라지는 것을 보여줌.

<표 1>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 전국 정당별 후보자수

시도명	정당별 여성 후보자수(명)																									
	계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중심연합		국민참여당		미래연합		사회당		친박연합		평화민주당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서울특별시	34	20	10	6	8	4	2	1	5	3	0	0	2	1	0	0	2	1	2	1	1	1	1	1	1	1
부산광역시	14	8	5	3	2	1	0	0	2	1	0	0	2	1	0	0	2	1	0	0	1	1	0	0	0	0
대구광역시	14	11	3	2	2	1	1	1	1	1	0	0	1	1	0	0	2	1	1	1	1	1	2	2	0	0
인천광역시	11	10	3	2	2	2	1	1	1	1	0	0	1	1	0	0	1	1	0	0	1	1	0	0	1	1
광주광역시	12	10	2	2	3	2	0	0	1	1	0	0	2	1	0	0	2	2	0	0	1	1	0	0	1	1
대전광역시	12	11	3	3	2	2	2	1	1	1	0	0	1	1	0	0	1	1	0	0	1	1	0	0	1	1
울산광역시	9	8	3	3	0	0	0	0	2	1	0	0	1	1	0	0	1	1	1	1	1	1	0	0	0	0
경기도	35	18	12	6	10	5	2	1	2	1	0	0	2	1	0	0	4	2	2	1	1	1	0	0	0	0
강원도	10	8	4	3	2	1	0	0	1	1	0	0	1	1	0	0	1	1	0	0	1	1	0	0	0	0
충청북도	14	9	3	2	2	1	2	1	2	1	0	0	1	1	0	0	1	1	2	1	1	1	0	0	0	0
충청남도	15	10	2	1	2	1	4	2	2	2	0	0	1	1	0	0	1	1	2	1	1	1	0	0	0	0
전라북도	13	8	2	1	4	2	0	0	2	1	0	0	2	1	0	0	1	1	0	0	1	1	0	0	1	1
전라남도	19	12	2	2	6	3	0	0	4	2	0	0	1	1	0	0	2	1	0	0	1	1	0	0	3	2
경상북도	17	9	5	2	2	1	0	0	2	1	0	0	1	1	0	0	2	1	2	1	1	1	2	1	0	0
경상남도	18	15	5	5	2	2	2	1	3	3	0	0	2	1	0	0	2	1	0	0	1	1	1	1	0	0
제주특별자치도	19	12	7	4	5	3	0	0	2	1	0	0	1	1	0	0	2	1	0	0	1	1	0	0	1	1
합계	266	179	71	47	54	31	16	9	33	22	0	0	22	16	0	0	27	18	12	7	16	16	6	5	9	8
여성 비율(%)	67.3		66.2		57.4		56.3		66.7		0.0		72.7		0.0		66.7		58.3		100		83.3		88.9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시스템 재구성.

- <표 2>에서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 성별 전국 당선자수를 살펴보면 전체 당선자수 81명 중 여성 당선자수는 58명(71.6%)으로 남성 당선자수보다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경상남도 당선자수 5명 중 여성이 5명(100%), 인천광역시·대전광역시 당선자수 3명 중 여성이 3명(100%), 울산광역시 당선자수 3명 중 여성이 3명(100%)으로 모두 여성이 당선된 것으로 나타남.
- 반면에 경기도는 전체 당선자수 12명 중 여성이 7명(58.3%)으로 전국에서 여성 당선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 전국 성별 당선자수를 살펴본 결과 전국 여성 당선자수가 전체의 71.6%로 남성 당선자수 보다 비례대표 당선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비례대표 여성할당제비율 50%가 적용된 결과임.

<표 2>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 성별 전국 당선자수

시도명	당선자수(명)	성별(명)		여성 당선자 비율(%)
		남	여	
합계	81	23	58	71.6
서울특별시	10	4	6	60.0
부산광역시	5	2	3	60.0
대구광역시	3	1	2	66.7
인천광역시	3	0	3	100.0
광주광역시	3	1	2	66.7
대전광역시	3	0	3	100.0
울산광역시	3	0	3	100.0
경기도	12	5	7	58.3
강원도	4	1	3	75.0
충청북도	3	1	2	66.7
충청남도	4	1	3	75.0
전라북도	4	1	3	75.0
전라남도	6	2	4	66.7
경상북도	6	2	4	66.7
경상남도	5	0	5	100.0
제주특별자치도	7	2	5	71.4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시스템 재구성.

- 역대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의원 비례대표 여성 후보자 및 당선자수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음(<표 3> 참조).
- 여성 후보자수의 경우는 5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0. 06. 02.)에서 전체 후보자 267명 중 여성 후보자수가 179명(67.1%)으로 가장 높았으며, 2회 전국동시지방선거(1998. 06. 04.)에서 전체 후보자 180명 중 여성 후보자수가 54명(30%)으로 가장 낮음을 알 수 있음.
- 여성 당선자수의 경우는 4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06. 05. 31.)에서 전체 당선자 78명 중 여성 당선자수가 57명(73.1%)으로 가장 높았으며, 2회 전국동시지방선거(1998. 06. 04.)에서 전체 당선자 74명 중 여성 당선자수가 27명(36.5%)으로 가장 낮음을 알 수 있음.
- 특히 1~2회 선거에 비해 3회 선거부터 비례대표 여성 후보자수와 여성 당선자수가 높아진 것은 2002년 여성 50% 공천 비례대표제의 개정 결과로 보임.

<표 3> 역대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의원 비례대표 여성후보자·당선자 수

	후보자수			당선자수			광역의원수		
	전체	여성	여성 비율 (%)	전체	여성	여성 비율 (%)	시·도 의회 의원	교육 의회 의원	총 의원수
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995. 06. 27.)	178	79	44.3	97	43	44.3	874	-	971
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998. 06. 04.)	180	54	30.0	74	27	36.5	616	-	690
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02. 06. 13.)	209	116	55.5	73	49	67.1	609	-	682
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06. 05. 31.)	211	136	64.5	78	57	73.1	655	5	738
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0. 06. 02.)	267	179	67.0	81	58	71.6	680	82	843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시스템 재구성.

- 이상으로 국내의 여성 정치참여 확대 방안을 정리하면 국내 여성 정치참여 비율이 높아진 것은 선거제도의 변화가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봄.

- 다음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1995년 광역의회에 비례대표직이 도입되면서 여성의원이 정계진출의 실마리가 되었으며, 2002년 이 제도가 개정되면서 여성의 정치참여 기회가 확대되었다고 봄. 그러나 여성의 정치적 세력화를 위한 대표성 확대 방안으로는 지역구 선출직 여성의원 비율이 증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선거문화와 의식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임.

<표 4> 역대 지방선거 제도변화

		선거제도	여성할당제
제3대 (2002)	비례대표제	광역의회선거 도입	- 50% 여성의무공천제(광역의회선거) - 순위 2인마다 여성1인 명부작성의무 - 위반 시 명부 등록무효(광역의회선거)
	정당공천제 (지역선거구)	광역의회선거 도입	- 시·도의회의원 후보자 30% 정당공천 권고 - 준수 정당에 대한 정치자금 인센티브
제4대 (2006)	비례대표제	기초의회선거 도입	- 50% 여성의무공천제(광역·기초의회) - 정당명부 흡수 의무 배정제도 도입 - 위반 시 명부 등록무효(광역의회선거)
	정당공천제 (지역선거구)	기초의회선거 도입	-
	중대선거구제	기초의회선거 도입	-
제5대 (2010)	비례대표제	광역, 기초선거 유지	- 50% 공천, 흡수순번배정 의무제 유지 - 위반 시 명부 등록무효 규정에 기초의회선거 포함
	정당공천제 (지역선거구)	광역, 기초선거 유지	- 정당의 지역구 후보추천 여성할당 의무제 - 위반 시 후보자 등록무효
	중대선거구제	정당추천 후보 기호배정에 정당자율권 부여	

· 출처 : 황아란·서복경,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과 선거제도 효과-지방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선거연구』 1-1, 한국선거학회, 2011, 102쪽.

5. 제주지역의 여성 정치참여 현황

- 우리나라의 여성 정치참여 형태는 국민의 입장에서 유권자로서 투표에 참여하는 기본적인 선거참여에서부터 자신이 직접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에 입후보하여 선출되는 것 등을 들 수 있음.

- 국내의 정치 환경과 제주지역의 여건이 어느 정도 차이점이 드러나는지는 다 각도를 조사하고 연구해야 할 것이나 여기서는 지방선거 결과 드러난 여성의 정치참여 현황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고자 함. 즉 역대지방선거제도의 변화가 제주지역의 정치 환경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며, 이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활용 가능성이 있다고 봄.

가. 투표를 통한 정치참여

- 투표는 정치행위의 가장 기본 사항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정치적 장치임. 따라서 지방자치가 시작된 1995년부터 현재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의 선거 투표자수는 다음과 같으며, 이는 투표구의 10%를 표본 추출한 표본조사 결과임.
-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원선거와 선거에 따른 남성과 여성의 투표인수를 비교한 결과 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체 선거인수 352,799명 중 남성 169,336명, 여성 183,463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14,127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투표자수를 살펴보면 전체 투표자 8,399명중 남성 4,161명, 여성 4,238명으로 투표자 수는 남성보다 여성이 77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5> 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원 투표인수 비교

(단위: 명)

구분	인구수	선거인수			투표자수		
		남	여	계	남	여	계
15대 국회의원선거 (1996. 4. 11)	519,453	169,336	183,463	352,799	4,161	4,238	8,399
16대 국회의원선거 (2000. 4. 13)	539,519	181,302	193,895	375,197	6,043	6,092	12,135
17대 국회의원선거 (2004. 4. 15)	539,519	191,826	203,430	395,256	11,308	11,160	22,468
18대 국회의원선거 (2008. 4. 9)	558,970	202,029	211,875	413,904	10,749	10,293	21,042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역대제주선거정보 재구성.

- 16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선거인수 부문은 여성이 남성보다 12,593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표자 수는 12,135명 중 남성 6,043명, 여성 6,092명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선거인수 부문은 여성이 남성보다 11,604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투표자수는 22,468명 중 남성 11,308명, 여성 11,160명으로 여성보다 남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선거인수 부문은 여성이 남성보다 9,846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투표자수는 21,042명 중 남성 10,749명, 여성 10,293명으로 여성보다 남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도의원선거와 선거에 따른 남성과 여성의 투표인수를 비교한 결과 5대 도의원 선거에서는 전체 선거인수 348,191명 중 남성 154,096명, 여성 181,322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27,226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투표자수를 살펴보면 전체 투표자 5,937명중 남성 2,903명, 여성 3,304명으로 투표자 수는 남성보다 여성이 131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6대 도의원선거에서도 선거인수 부문은 여성이 남성보다 12,545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표자 수는 11,129명 중 남성 5,475명, 여성 5,654명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6>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선거 투표인수 비교

(단위: 명)

구분	인구수	선거인수			투표자수		
		남	여	계	남	여	계
5대 도의원선거 (1995. 6. 27)	515,629	154,096	181,322	348,191	2,903	3,034	5,937
6대 도의원선거 (1998. 6. 4)	530,285	176,288	188,833	365,121	5,475	5,654	11,129
7대 도의원선거 (2002. 6. 13)	549,012	187,700	200,282	387,982	10,182	10,619	20,801
8대 도의원선거 (2006. 5. 31)	558,455	201,204	210,658	411,862	14,011	14,343	28,354
9대 도의원선거 (2010. 6. 2)	565,192	207,866	216,232	424,098	11,415	11,691	23,106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역대제주선거정보 재구성.

- 7대 도의원선거에서도 선거인수 부문은 여성이 남성보다 12,582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표자 수는 20,801명 중 남성 10,182명, 여성 10,619명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8대 도의원선거에서도 선거인수 부문은 여성이 남성보다 9,454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표자수는 28,354명 중 남성 14,011명, 여성 14,343명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9대 도의원선거에서도 선거인수 부문은 여성이 남성보다 8,366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표자수는 21,042명 중 남성 11,415명, 여성 11,691명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나. 입후보를 통한 정치참여

- 입후보를 통한 정치참여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나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에 진출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경우로, 여성의 진출 현황을 남성과 비교해 보면 여성의 대표 형태를 알아볼 수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원 입후보 현황을 살펴보면 15대, 16대, 17대에는 입후보한 여성이 1명도 없었으며, 2008년 18대 선거에서 1명이 입후보함.

<표 7> 국회의원 입후보 비교

구분	연도	입후보 현황		
		남성(명)	여성(명)	
국회의원 선거	15대	1996	18	-
	16대	2000	10	-
	17대	2004	11	-
	18대	2008	14	1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총람』 재구성.

- 제주특별자치도의 국회의원 당선자 현황을 살펴보면 모두 17대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여성의원인 당선이 되었으며, 15대, 16대, 18대 선거 모두 남성 후보자가 당선됨.

<표 8> 국회의원 당선자 비교

구분	연도	당선자 현황		비례대표 당선자 현황		
		남성(명)	여성(명)	남성(명)	여성(명)	
국회의원 선거	15대	1996	3	-	-	-
	16대	2000	3	-	-	-
	17대	2004	3	-	-	1
	18대	2008	3	-	-	-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총람』 재구성.

-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 의원 선거 입후보 현황을 살펴보면 5대, 6대 선거에는 입후보한 여성이 1명도 없었으며, 7대 1명, 8대 4명, 9대 5명의 여성후보가 입후보함.
-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 의원 당선자 현황을 살펴보면 5대 선거에서 당선자는 17명으로 모두 남성이며, 비례대표 당선자 현황은 남성 2명, 여성 1명이 당선됨.
- 6대 선거에서는 당선자 14명 모두 남성이며, 비례대표 당선자 현황은 남성 2명 여성 1명으로 나타났으며, 7대 선거는 당선자 16명 모두 남성이고, 비례대표 당선자 남성 1명, 여성 2명으로 나타났음.
- 8대, 9대 선거에서는 당선자 29명 모두 남성이며, 비례대표 당선자 현황은 남성 2명, 여성 5명이 당선됨.

<표 9> 도의회 의원 입후보 · 당선자 비교

구분	연도	입후보 현황		당선자 현황		비례대표 당선자 현황		
		남성(명)	여성(명)	남성(명)	여성(명)	남성(명)	여성(명)	
도의회 의원선거	5대	1995	46	-	17	-	2	1
	6대	1998	38	-	14	-	2	1
	7대	2002	39	1	16	-	1	2
	8대	2006	104	4	29	-	2	5
	9대	2010	70	5	29	-	2	5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총람』 재구성.

- 제주지역의 광역의원 비례대표 여성 후보자와 당선자 수를 분석하면 <표 10>과 같으며, <표 9>의 비례대표 부문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함.

- 여성 비례대표 후보자수의 경우는 4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06. 05. 31.)에서 전체 후보자 18명 중 여성 후보자수가 10명(55.6%)으로 가장 높았으며, 1회 전국동시지방선거(1995. 06. 27.)에서 전체 후보자 5명 중 여성 후보자수가 1명(20%)으로 가장 낮음을 알 수 있음.
- 여성 비례대표 당선자수의 경우는 4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06. 05. 31.)와 5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0. 06. 02.) 모두 전체 당선자 7명 중 여성이 5명(71.4%)으로 높게 나타남. 1회 전국동시지방선거(1995. 06. 27.), 2회 전국동시지방선거(1998. 06. 04.)에서는 모두 전체 당선자 3명 중 1명(33.3%)으로 남성 당선자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3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02. 05. 31.)는 당선자 3명 중 여성이 2명(66.7%)으로 남성 당선자수보다 높게 나타남.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비례대표 여성의원은 4회와 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5명이 의회로 진출하면서 제주사회에서는 여성 비례대표 도의원은 최소한 5석을 차지한다는 인식이 퍼져있음. 따라서 향후 5석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여성의 정치참여 후퇴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봄.

<표 10> 역대 제주도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의원 비례대표 여성후보·당선자 현황

지방선거	후보 자 (명)	남성 후보 자수 (명)	여성 후보 자수 (명)	비율 (%)	당선 자 (명)	남성 당선 자수 (명)	여성 당선 자수 (명)	비율 (%)	광역의원수		
									시·도 의회 의원	교육 의회 의원	총 의원수
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995. 06. 27.)	5	4	1	20.0	3	2	1	33.3	17	-	20
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998. 06. 04.)	6	4	2	33.3	3	2	1	33.3	14	-	17
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02. 06. 13.)	7	3	4	57.1	3	1	2	66.7	16	-	19
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06. 05. 31.)	18	8	10	55.6	7	2	5	71.4	29	5	41
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0. 06. 02.)	19	12	7	36.8	7	2	5	71.4	29	5	41

· 출처 : 제주선거관리위원회 역대제주선거정보 재구성.

- 2010년 제주지역 광역의원 후보자 및 당선자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표 11>).
- 여성 후보자수의 경우는 전체 후보자 75명 중 5명(6.7%)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제주시 전체 후보자 52명 중 3명(5.8%), 서귀포시 23명 중 2명(8.7%)으로 나타났음. 여성 당선자수의 경우는 전체 당선자수 29명 중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 후보자 5명은 ‘여성의무공천제도’ 시행에 따른 것이며, 선거준비기간, 여성후보의 인지도, 지역구 관리 등 선거 출마에 필요한 여건 조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패배했다고 볼 수 있음. 5회 지방선거의 실패요인을 토대로 하여 6회 지방선거에서는 여성 후보들의 역량강화 등을 통해 제주지역에서도 지역구 진출 여성도의원이 배출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함.

<표 11> 2010년 제주지역 광역의원 지역구 후보자·당선자 수

	후보자수	성별		당선자수	성별	
		남	여		남	여
합계	75	70	5	29	29	0
제주시	52	49	3	19	19	0
서귀포시	23	21	2	10	10	0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시스템 재구성.

-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별 지역구 여성 후보 공천 및 당선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표 12>).
- 광역의회 정당별 전체 여성 공천자수는 154명으로 이중 ‘한나라당’이 53명(34.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민주당’이 41명(26.6%)으로 높게 나타남.
- 광역의회 정당별 전체 여성 당선자수는 55명으로 공천대비 35.7%이며, ‘민주당’이 공천자 수 41명 중 당선자수 26명(63.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한나라당’이 공천자수 53명 중 당선자수 20명(37.7%)으로 높게 나타남.

<표 12>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별 지역구 여성후보 공천자·당선자 수

정당	광역의회		
	공천자수	당선자수	당선율(%)
한나라당	53	20	37.7
민주당	41	26	63.4
자유선진당	3	0	0.0
민주노동당	19	7	36.8
창조한국당	0	0	0.0
진보신당	5	1	20.0
국민중심연합	1	0	0.0
국민참여당	3	0	0.0
미래연합	3	0	0.0
사회당	0	0	0.0
친박연합	1	0	0.0
평화민주당	1	0	0.0
무소속	24	1	4.2
여성 합계	154	55	35.7
남성	1610	615	38.2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시스템 재구성.

-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지역 광역의원 정당별 후보자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표 13>).
- 전체 후보자 75명 중 ‘한나라당’이 28명(37.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민주당’이 27명(36%)으로 높게 나타남.
- 여성 후보자는 전체 75명 중 5명(6.7%)이며, 지역별로는 제주시 전체 후보자 52명 중 3명(5.8%)이며, 서귀포시는 전체 후보자 23명 중 2명(8.7%)임.
-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28명으로 전체 대비 37.3%를 차지하며, 이중 여성 후보자수는 3명으로 전체 10.7%를 차지함.
- ‘한나라당’의 경우 여성 후보자 3명 중 제주시지역에 2명, 서귀포시지역에 1명의 후보자를 배출함.
- ‘민주당’은 27명으로 전체 대비 36%를 차지하며, 이중 여성 후보자수는 2명으로 전체 7.4%를 차지함. 여성 후보자 2명 중 제주시지역에 1명, 서귀포시지역에 1명의 후보자를 배출함.

<표 13>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지역 광역의원 정당별 후보자수

	정당별 후보자수																						
	구 수	계	한나 라당	민주 당	자유 선진 당	민주 노동 당	창조 한국 당	진보 신당	국민 중심 연합	건국 당	국민 참여 당	국제 녹색 당	미래 연합	사회 당	자유 평화 당	친박 연합	평화 민주 당	무소 속					
	전 체	여 성	전 체	여 성	전 체	여 성	전 체	여 성	전 체	여 성	전 체	여 성	전 체	여 성	전 체	여 성	전 체	여 성	전 체	여 성			
합계	29	75	5	28	3	27	2	1	0	5	0	0	0	0	2	0	0	0	0	0	12	0	
제주시	19	52	3	19	2	17	1	1	0	4	0	0	0	2	0	0	0	0	0	0	0	9	0
서귀포시	10	23	2	9	1	10	1	0	0	1	0	0	0	0	0	0	0	0	0	0	0	3	0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시스템 재구성.

-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지역 광역의원 정당별 당선자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표 14>).
- ‘한나라당’의 경우 제주지역 전체 당선자 29명 중 9명(33.3%)이 당선되었으며, 이중 여성 당선자수는 한 명도 없음.
- ‘민주당’의 경우 제주지역 전체 당선자 29명 중 16명(55.2%)이 당선되었으며, 이중 여성 당선자수는 한 명도 없음.

<표 14>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지역 광역의원 정당별 당선자수

	당선 자수	정당별 당선자수																						
		한나 라당	민주 당	자유 선진 당	민주 노동 당	창조 한국 당	진보 신당	국민 중심 연합	건국 당	국민 참여 당	국제 녹색 당	미래 연합	사회 당	자유 평화 당	친박 연합	평화 민주 당	무소 속							
	전 체	여 성	전 체	여 성	전 체	여 성	전 체	여 성	전 체	여 성	전 체	여 성	전 체	여 성	전 체	여 성	전 체	여 성	전 체	여 성	전 체	여 성		
합계	29	0	9	0	16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3	0	
제주시	19	0	6	0	1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2	0
서귀포시	10	0	3	0	6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시스템 재구성.

- 앞에서 논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제주지역의 여성 정치참여와 입후보를 통한 여성 정치참여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음.
- 입후보를 통한 정치참여 부문에서도 15·16·17·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여성후보는 1명도 없으며, 18대에 1명 출마하였으나, 투표결과 낙선하였음.
- 당선자 비율을 살펴보면 15·16·17·18대 국회의원 중 17대에 여성의원이 1명 당선되었으나, 이는 선거를 통한 당선이 아닌 비례대표제 실시에 따른 당선임.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 여성 입후보자를 살펴보면 1회, 2회 동시지방선거에는 여성 입후보자가 1명도 없었으며, 3회 1명, 4회 4명의 여성 입후보자가 출마하였으나 모두 낙선하였음.
- 이와 같은 선거결과를 토대로 지역과 정당에 따라 여성의 정치참여 현황을 알 수 있으며, 여성정치인 양성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데 있어 참조 가능함.

Ⅲ. 제주지역 여성정치인의 여성 정치참여 면접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 조사 목적은 제주지역 여성 정치인들의 여성 정치참여 현황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여성의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여성 정치참여 증대 방안을 연구하는데 있음. 이러한 연구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진출 비례대표 여성 도의원만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음.
- 설문지는 ‘제주지역 여성의 정치참여, 정당적 관점, 법·제도적 개선,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지역별 정당 여성의무공천제, 사회문화적 관점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 15>와 같음.
- 자료 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연구자가 여성정치인을 방문하여, 직접(face-to-face) 면접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 이메일로 사전에 설문지를 발송하여 내용을 확인하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배정했음. 개인사정으로 정해진 기간에 직접 면접이 불가능한 경우 사전 양해하에 이메일로 응답하여 주도록 요청하는 방식을 병행 사용하였음.
- 자료 수집은 2011년 7월~8월 중순까지 진행되었음.

<표 15> 심층면접 조사영역

영역	세부 내용
제주지역 여성의 정치참여	참여 여건, 긍정적 요인, 부정적 요인
정당적 관점	정당의 역할, 제주도당의 기여도, 역할
법·제도적 개선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 개선 방안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비례대표 여성할당제의 긍정적 평가, 부정적 평가, 이 제도의 지속 여부
지역별 정당 여성의무공천제	지역별 정당 여성 의무공천제도의 긍정적 평가, 부정적 평가, 이 제도의 지속 여부
사회문화적 관점	여성 정치참여의 저해요인, 여성지도자 양성 방안

- 이 연구는 제주지역의 전·현직 여성정치인을 연구범위로 설정했기 때문에 면접대상자는 전·현직 여성도의원 15명이고, 여성 국회의원 1명은 추가 자료로 활용하였음.
- 면접대상자 15명 중 2명은 2선 의원이어서 중복되므로 면접자는 13명이며, 이 중 응답이 어려운 2명을 제외하고 11명이 응답한 설문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했음.
- 이 연구보고서에서 여성의원들의 사례를 제시할 때 11명의 응답자를 무작위로 번호를 부여하여 ‘의원 1, 의원 2’ 등으로 분류하여 이해를 돕고자 함.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1995년부터 2010년까지 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제주지역에서 여성정치인 당선 결과를 보면 지역구는 단 1명도 없음.
- 2004년 17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민주노동당 여성의원 1명 당선됨.

<표 16> 제주지역 광역의원·국회의원 비례대표 여성 당선자

선거	소속정당명	당선자	비고
1995년 (5대) 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한나라당	고앵자	
1998년 (6대) 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새정치국민회의	임기옥	
2002년 (7대)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새천년민주당	임기옥	
	한나라당	김영희	
2006년 (8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민주당	방문추	17대(2004년) 비례대표 국회의원 민주노동당 현애자
	열린우리당	오옥만	
	민주당	오정희(보궐)	
	한나라당	김순효	
	한나라당	김미자	
	민주노동당	김혜자	
2010년 (9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한나라당	현정화	
	한나라당	이선화	
	민주당	방문추	
	민주노동당	김영심	
	국민참여당	박주희	

- 비례대표로 당선된 여성도의원은 1995년 1명, 1998년 1명, 2002년 2명, 2006년 5명(2009년 민주당 오옥만 의원의 사퇴로, 오정희 의원이 의원직 승계), 2010년 5명임.
- 제주특별자치도 8대 여성도의원 연령대는(2006년 당선 당시) 30대 1명, 40대 1명, 50대 2명, 60대 1명임. 9대 여성도의원 연령대는(2010년 당선 당시) 30대 2명, 40대 2명, 50대 1명으로 구분됨.
- 3장에서는 역대 지방선거 결과 비례대표로 도의회에 진출한 여성도의원 대상 심층면접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정리하였음.

3. 제주지역 여성의 정치참여

- 이 연구에서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1995년부터 현재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실시된 지방선거 중 도의원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한 여성 정치참여 현황과 제주특별자치도 전·현직 도의원 면접조사를 통해 여성 정치참여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고자 함.

가. 제주지역 여성의 정치참여 현황 인식

- 여성의 정치참여가 과거에 비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응답을 보면 과거에 비해 정치참여가 매우 높아졌다 6명(55%),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 3명(27%), 그저 그렇다 2명(18%) 순으로 응답함.
- 제주지역 여성의 정치참여 환경이 높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82%(9명)로 나타난 것을 보더라도 적어도 민선 1기~4기에 비해 민선 5기 광역의원 선거를 통해서 여성 정치참여도가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17> 제주지역 여성의 정치참여 현황 인식

구분	매우 낮음	낮음	그저 그러함	높아짐	매우 높아짐	계
빈도(명)	0	0	2	3	6	11
비율(%)	0	0	18	27	55	100

나.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요인 여부

- 여성의 정치참여가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다는 응답자들에게 개선의 요인으로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을 확인한 결과 응답자들은 여성의 정치참여 여건이 개선되었으나 흡족할 만한 상태는 아니라고 응답했음.

1) 긍정적 요인 응답 내용

-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17대 총선 관련 정당법 개정을 통해 비례대표 50%, 지역구 30% 등으로 남성중심의 보수적 정치요인들을 개선함으로써 여성들의 정치적 참여가 높아졌다고 보았음. 또한 과거에 비해 여성들의 정치참여 의식이 높아졌다는 응답이 있었음.

예전에는 여성들이 정치참여를 기피했는데 현재는 정치참여 의식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본다. 여성들의 교육수준도 높아져서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많아지면서 경제적인 것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 (의원 6)

여성들의 정치참여 욕구가 강해졌다. (의원 5)

- 또한 여성의 정치참여도가 높아진 지역이 많아졌다고 응답하였으며, 정당의 비례대표제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당원으로서 오랫동안 봉사활동 등을 통해 정치활동을 했던 여성들이 비례대표로 정계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고 보았음.
-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제도적 개선을 통해 여성 투표율을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보았으며, 정당 중심으로 여성의 정치참여율을 높여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점, 비례대표제와 여성의무할당제와 같은 제도적 개선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식 변화가 여성의 정치참여를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응답했음.
- 따라서 면접조사 결과를 통해서 여성의 정치참여 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사회적 인식이 따라가지 못하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고히 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함을 알 수 있음.

2) 부정적 요인 응답 내용

- 제주지역에서 여성들의 정치참여 환경에 대한 부정적 요인은 대략 '다른 지역

에 비해 제주지역이 보수적임. 유교적 이념이 강함. 선진국에 비해 여성의 권리가 낮음. 정치를 남성의 영역으로 생각함.' 등을 제시했음. 이러한 부정적 요인들이 구체적으로 반영되는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정당정치에서 여성들은 당을 위해 헌신하고 있으나 여성의 권익과 위상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음. 정당활동 시 여성당원의 당직 참여를 확대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응답이 있었음.

그동안 여성의 정치적 역할이 매우 컸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원의 비율은 낮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정당활동을 통해 여성들은 누구보다도 당을 위해 헌신해 왔으나 정당한 예우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정당활동은 정치인에게 중요하고, 정당활동을 통해 정치적인 감각을 익힐 수 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정치이다. 여성이 알고 있는 분야만 잘 접목을 시켜도 훌륭한 정치를 할 수 있다. (의원 2)

- 또한 선거활동에 필요한 자금력과 여성 후보에 대한 지지도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보았으며, 여성들이 여성 정치인에 대한 미온적인 지지도와 드러내 놓고 신뢰하지 못하는 인식 등이 제주사회에 퍼져 있다는 응답결과를 보더라도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함을 알 수 있음.

여성 유권자들이 여성 정치인을 지지하지 못하는 현실이 여성정치인의 성장을 가장 크게 가로막는 요인이라 생각한다. (의원 8)

- 선거제도 외에도 제주도의 독특한 '퀘당문화'가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저해하게 만들었다는 응답이 있음.
- 제주지역은 특별자치도로 재편되고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면서 기초의원 선거를 통한 여성의 정치참여 기회가 줄어들었다고 봄. 즉 제주지역은 2005년 7월 시·군 기초자치단체의 폐지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와 중선거제가 실현되지 못함으로써 여성의 정치참여 기회가 약화되었다는 입장을 피력했음. 또한 제4회(2006)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전국적으로 지방의원 유급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비례대표제, 기초의원 선거의 중선거제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어 치러짐.

4. 정당적 관점

가. 여성 정치참여와 정당의 역할

- 여성의 정치참여를 높이는 요인으로 정당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명(9%), 역할이 높다 5명(45.5%), 그저 그렇다 5명(45.5%) 순으로 응답했으며, 정당의 역할이 낮다는 응답은 전무함.
- 이러한 응답률을 보더라도 현재 제주지역에서는 여성들의 정치참여에 정당이 어느 정도 기여함을 알 수 있음.

<표 18>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정당의 역할

구분	매우 낮음	낮음	그저 그렇함	높아짐	매우 높아짐	계
빈도(명)	0	0	5	5	1	11
비율(%)	0	0	45.5	45.5	9	100

- 정당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정당별로 구체적인 참여방법은 다른 형태를 띠고 있으나, 정치에 대한 여성의 의식수준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실질적 참여와 연동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제주도당의 역할 한계점으로는 여성후보를 위한 여성 연설자와 찬조 연설자가 없고, 정치아카데미 또는 정치대학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데 있어 본인 스스로 정치지도자의 준비단계로 생각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여성이 극히 제한적인 점이 있다고 보았음.
- 또한 선출직(지역구)에 출마하기에는 인지도·조직·제정·사회적 관심과 배려의 부족이 나타나 여성후보 의무공천제가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이 되었으나 단순히 규정 준수 차원에서 형식적인 공천이 이루어진 점을 들고 있음.
- 여성들이 경쟁력을 향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당에서는 그러한 여성들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당의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해 보다 경쟁력 있는 남성에게 양보해야 한다는 편견 등이 지적됨.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당에서 최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으로, 전문적인 여성지도자 발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 관련 정책의 다양한 개발 시도, 우세 지역에서 여성공천 의무화, 여성정치발전기금을 여성위원회 사업에 우선 배정, 여성정치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정치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이 제안되었음.

나. 정당의 역할론

- 비례대표 여성할당제와 지역구 여성할당공천제가 시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 정당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응답자들이 주요하게 인식하는 사항으로 여성의 정치참여를 높인데 정당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관점이 우세함. 면접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1) 여성 정치참여에 대한 A정당의 기여도

- A정당은 제도적 개선만으로는 여성의 정치참여 비율이 낮다는 인식하에 비례대표 추천과 지역구의원이 공천비율을 상향조정하고 권고 조항으로 돼 있는 여성후보자 추천과 비율을 의무화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하였음.

비례대표 50% 지역구 공천 30% 할당으로 정치참여를 높였고, 국고보조 10%를 여성발전기금으로 사용했다. 중앙당 후원 일정비용을 여성의 정치적 참여를 높이하고자 차세대 여성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여성정치 지망생을 양성하고 있다. (의원 3)

- 여성의원 보좌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차세대 여성정치인을 양성하기 위해 국회보좌진 육성 교육과정과 전국여대생 릴레이 특강을 실시함. 시·도당에서는 여성의 정치참여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여성 정치아카데미를 운영함으로써 정당의 역할을 의미있게 인식하고 있음.

A정당은 도당 차원에서는 아카데미강좌를 통해 정치희망생들에게 정당의 정책 등 여성정치인으로서 역량을 넓힐 수 있게 기회를 주고 있다. (의원 2)

- 국회보좌관 육성과 교육과정 수료 시 의원실 인턴십이 제공되고 관련업종 취업시 추천서를 발급해줌으로써 여대생 및 취업준비생들의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했음.

2) 여성 정치참여에 대한 B정당의 기여도

- B정당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데 비례대표 여성할당제와 지역구 여성공천제 실시에 동참하고 있으며, 리더십센터의 여성 정치참여에 필요한 정예교육 실시 등을 정당의 높은 기여도로 보고 있음.

3) 여성 정치참여에 대한 C정당의 기여도

- C정당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당헌당규로 당직에 30% 이상 여성 참여를 권고하고 있으며, 전략공천지역 후보자 역시 30% 이상 여성 배정을 규정하고 있고, 여성후보에게 경선 20% 가점을 부여하고 있는 등 기여도가 높다고 응답했음.
- 또한 비례대표 후보의 경우, 여성 후보의 비율 50% 이상을 규정하는 등 여성의 정치참여 기회를 제도적으로 확대 보장하고 있음. 비례대표 1번과 2번을 여성후보로 공천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고 응답함.
- 특히 C정당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0년)에서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 총 27명 중 여성 후보를 18명 공천하여 광역의원 비례대표 여성후보 비율이 66.7%에 달했으며, 광역의원으로 총49명 공천자 중 여성 4명을 광역의원 후보로 공천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었다고 봄.
- 2010년 지방선거에서 여성후보를 총 74명 공천하였는데 기초의원비례대표 후보 총 47명 중 39명(83%)을 여성으로 공천하였으며, 기초의원 후보 공천자 총 140명 중 13명을 여성으로 공천함.
- 중앙당 차원에서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며, 당헌당규에 당원교육으로 양성평등교육 실시를 규정하고 있어서 정당내 여성당원의 예우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고 평가함.

4) 여성 정치참여에 대한 D정당의 기여도

- D정당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제와 여성의무할당제를 준수

하고 있으며, 여성공천제도를 당내에 두고 여성공천 비율을 계속 높여가는 경향이 있다고 응답함.

- 여성후보자를 위해 정치자금을 지원하고, 여성정치아카데미, 여성정치포럼 등을 운영함으로써 여성정치인 양성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는 반응을 보임.

여성후보의 비례대표 1번 배정이라든지 30% 여성후보 할당제 같은 제도로 정당차원에서 여성후보를 배려하는 제도는 아주 잘되고 있다. (의원 8)

- 이상으로 여성 도의원들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소속 정당의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정계진출 여성정치인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당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음.

다. 제주도당의 역할

- 다음은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높이는데 제주도당의 기여도와 역할을 알아보았으며, 1명(9.1%)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응답하였고, 2명(18.2%)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4명(36.4%)은 그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4명(36.4%)은 별 역할이 없었다고 응답하였음.
- 정당별 제주도당은 여성의 정치참여와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긍정적인 요인이 있으나 여성정치인의 수를 늘여야 하겠다는 의식은 부족하다고 인식함.
- 제주도당의 역할로 그저 그렇다와 미미하다는 응답이 8명(72.8%)이고, 중요하다라는 응답은 3명(27.3%)으로 나타나서 정당의 역할이 높아져야 함을 알 수 있음.

<표 19> 제주도당의 역할

구분	매우 미미함	미미함	그저 그러함	중요함	매우 중요함	계
빈도(명)	0	4	4	2	1	11
비율(%)	0	36.4	36.4	18.2	9.1	100

라. 제주도당의 역할 한계점

-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주도당의 역할 한계점을 묻는 질문에 여성후보를 위한 여성 연설자와 찬조 연설자의 협조가 없음을 아쉬워했음.

여성후보를 위한 여성 연설자, 찬조 연설자가 없다. 이러한 것들을 '왜 여자들이 해야 하는가'라는 식의 부정적인 발언들은 제쳐두고라도 여성 연설자에 대한 좋은 점을 먼저 보려고 해야 할 것 같다. (의원 1)

- 또한 정치아카데미나 정치대학원 등 정치지도자 양성 과정 이수에 대한 도당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견해가 있음. 즉 여성당원 중에는 정치지도자의 준비 단계로 생각하여 양성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여성당원은 극소수라는 한계가 있다고 응답함.
- 이에 선출직(지역구)에 출마하기에는 인지도·조직·제정·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부족하므로 여성후보 의무공천제가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이 되었으나 단순히 규정 준수 차원에서 형식적인 공천이 되었다고 봄.

여성의 경우 현실적으로 본인의 의지와 결정에 따라 선출직(지역구)에 출마하기에는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정 준수 차원에서만 형식적으로 공천이 이루어져서 여성후보의 당선을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대책이 없다. (의원 3)

- 또한 당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비율은 남성당원과 여성당원이 비슷하나, 당비를 내는 당원 중 여성당원이 남성당원에 비해 비율이 낮은 이유는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 생기는 한계로 보았음.

당비를 내는 당원(주권당원, 예비주권당원) 총 217명 중 여성당원이 61명(28%)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정당 활동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다. 일반당원의 경우 여성은 총 1,087명 중 461명으로 42%에 해당된다. (의원 4)

- 여성들이 경쟁력을 향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도당에서는 그러한 여성들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봄. 즉 당의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해 보다 경쟁력 있는 남성에게 양보해야 한다는 인식이 제주도당의 한계로 지적되었음.

여성들이 스스로 정치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출마하기를 권장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정당에서는 여성들의 정치활동을 위한 취약점을 보완해 주려는 의지도 없다. 동일 지역구에서 여성과 남성이 출마하면 남성당원에게 공천을 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여성의 권익신장이나 지위향상을 위해서 여성당원을 공천해 주려는 의지는 없다고 본다. (의원 6)

- 정당에 따라 입장차이가 다르겠지만 제주도당 차원에서라도 신규 여성당원 확충을 위한 노력에 소홀한 경향이 있음. 각계각층의 신진 여성 정치지망생들을 수시로 모집하여 제주도당의 여성정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여야 지역주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이 있었음.
- 정당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고위직은 남성이 독차지하거나 여성당원들의 참여가 아주 제한적이어서 여성의 정치적인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음.

정당 내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고위직은 남성들이 독점하면서 여성에게 불리한 점이 있다. 또한 여성이 참여한다고 해도 한 석 정도 밖에 없다. 그것도 의무적이다. (의원 9)

- 따라서 제주도당에서는 여성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안하지 못함으로써 여성당원은 물론 유권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음. 이와 같은 단점을 보완하고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제주도당에서는 여성후보자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며 역량을 갖춘 여성후보자를 발굴하는 것이 우선 과제로 보임.

마. 정당이 시급해 개선해야 할 점

-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정당이 최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대안으로는 먼저 전문적인 여성지도자 발굴과 양성을 들고 있음.

우수여성인력 발굴 및 양성이 최고의 소임에도 불구하고 역할이 미미하고 관심이 부족하다고 본다. 여성의 당면 과제를 가장 잘 아는 대상이 여성이나 여성관련 의제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의원 2)

- 다음으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 관련 정책이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함을 제안하였으며, 지역 선거구에서 당선 가능성이 있거나 우세 지역에서 여성공천 의무화가 제도화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음.

여성후보자에게 우세지역 공천이 개정 사항이지만 열세지역을 택하도록 유도해 불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여성후보자에게 우세지역을 공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의원 3)

- 세 번째 대안으로는 여성당원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참여 계획과 지속적인 프로그램 관리가 필요하고, 정당별로 배정되는 여성정치발전기금을 여성위원회 사업에 우선 배정해서 여성의 정치력 향상에만 쓰이기를 제안했음. 또한 여성정치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정치훈련 프로그램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음.

여성정치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정치 훈련을 받아서 스피치 연습도 하고 실전에서 뛰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선거에 이길 것인가에 대한 전략, 전술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참모들도 육성해 내고 그 참모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통솔하는지에 대해서도 배우는 등 정치지도자 양성을 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의원 6)

정치지도자 교육을 통해 여성 정치지망생들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지를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교육은 시민단체나 정당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의원 7)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하다. 또한 기성세대만이 아니라 청소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차세대 지도자 발굴에 힘써야 한다. (의원 2)

- 마지막으로 여성 정치인들은 생활정치를 통해 여성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바. 정당이 추구해야 할 단기적인 목표

-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정당의 역할이 강조됨은 앞에서도 보았듯이 여

성 정치인들은 정당의 단기 목표로는 우선 여성조직 강화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전문성과 헌신성을 갖춘 여성인재 발굴(실력 있는 여성정치인 양성)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음.

- 또한 여성위원회 워크숍, 아카데미 운영, 능력개발 및 자질 향상을 추진해야 하며, 여성단체와 정책간담회 운영에 주력하고, 여성 관련 위원회와 대화를 통해 제주도당과 각 위원회의 의견 조율 등을 정당의 역할로 제안하였음.
- 정당이 추구해야 할 단기 목표를 좀더 살펴보면 정당의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 비율을 확대하고, 여성 후보자에 대한 정당의 지원 체계 마련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정치 지망생과 예비 후보자, 예비 후보 대상자 등 정치활동가들에게 집약적인 정치교육 실시 등을 제안하고 있음.
- 이외에도 여성들의 적극적 정치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주도당의 환경 여건 조성이 우선 추진해야 할 목표로 보고 있음.

여성위원회나 동아리 결성을 통해 협동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토론문화 참여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유권자들과 친밀하게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원 8)

사. 정당이 추구해야 할 장기적 목표

- 앞에서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정당의 단기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장기 목표로는 가정생활과 병행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정치아카데미를 시행해야 하고, 여성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참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주는 것을 들고 있음.
-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여성들의 일자리 확대 방안을 제시해 주어야 하고, 여성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 정치자금 지원은 미국, 영국 등에서도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능력 있는 여성들이 마음 놓고 선거에 나설 수 있게 여성정치기금을 만들고 지역후보 경선시 경선비용, 선거비용 등을 남성후보와 차등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여 여성후보에 대한 별도의 재정지원 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그러나 이러한 대안들은 남녀차별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봄.

- 또한 여성들의 정치참여 기회를 높이기 위해 상시 간담회를 개최해야 하며, 집안문제, 경제력과 같은 여성들이 안고 있는 실질적인 현안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정당의 역할로 제기하였음.
- 이외에도 여성 정치인을 위한 별도의 선거자금 지원과 다양한 선거제도의 개선을 정당의 장기 목표로 제시하였음.
- 이상으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정당의 역할을 강조하면 비례대표 여성할당제와 지역구 여성의무공천제가 시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 정당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정당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고위직은 남성들이 독차지하거나 여성의 참여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서 이들의 정치적인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한계로 볼 수 있음.

5. 법·제도적 개선

-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법·제도 개선 여부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 매우 그렇다 3명(27.3%), 그렇다 3명(27.3%), 그저 그렇다 5명(45.5%) 순으로 나타남.
-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있으나 시급성이 긴박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20> 법·제도 개선의 필요 여부

	매우 미미함	미미함	그저 그러함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
빈도(명)	0	0	5	3	3	11
비율(%)	0	0	45.5	27.3	27.3	100

- 여성정치인들의 법·제도적 개선 요구사항을 좀 더 살펴보면 정치와 공직의 여성 참여확대, 여성의 역량강화 사회분위기 조성, 여성정치인 및 여성지도자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등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1구 2인제로 1개 선거구에서 남녀 1인씩 2인을 선출하는 선거제도를 만들어 여성의 정치참여 비율이 높아진다고 확신한다. (의원 8)

- 또한 여성인재 발굴과 인력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선거자금 차등 지원, 정당법 개선, 중선거구제 도입 등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특히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 방안 검토 제안이 있음. 즉 유권자의 의사를 공정하게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과 사표를 최소화하고 유권자의 선호가 의석에 정확하게 반영시키는 비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당득표율에 비례에 의석수를 결정하는 비례대표제(지역대표성과 정당득표율을 균형있게 반영하는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음.

<표 21> 여성권한척도(GEM)가 높은 국가별 선거제도 비교

국가	GEM(순위)	선거제도
스웨덴	0.90900(1위)	대선거구제, (개방형)정당명부비례대표제
노르웨이	0.90600(2위)	대선거구제, (개방형) 정당명부비례대표제
핀란드	0.90200(3위)	대선거구제,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덴마크	0.89600(4위)	대선거구제,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네덜란드	0.88200(5위)	전국단위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벨기에	0.87400(6위)	중대선거구제,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독일	0.85200(9위)	소선거구제, (권역별)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뉴질랜드	0.84100(10위)	독일식으로 선거제도 개혁

- 유엔개발계획(UNDP), 『인간개발보고서(HDI)』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참조).
- 여성권한척도(GEM)는 2009년 기준

- 법·제도의 개선 방안으로 지방의원 특히 여성 지방의원에 대한 후원회제도 도입에 제기됨. 이는 한국의 정치인에 대한 후원회제도는 국회의원에 한정되어 있어 지방의회의 지방정치인에 대한 소액 다수 후원회제도는 구축되어 있지 않음. 1991년 지방의원선거 실시 이후 정치자금법의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지방의원에 대한 후원회제도 구축을 위한 입법 추진이 차단됨. 따라서 국회의원이 지역구 소속 지방의원의 공천권을 행사하는 기득권 유지의 수단이 되고 있음.
- 이외에도 여성전용선거구를 도입해서 어떤 한 지역은 여성들만 출마할 수 있는 제도 도입과 1구 2인제로 1개 선거구에서 남녀 1인씩 2인을 선출하는 선거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있었음.

6.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가. 비례대표 여성할당제에 대한 인식

-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으로 비례대표 여성할당제에 대한 응답을 보면 10명(90.9%)이 아주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1명(9.1%)은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어서 결국 이 제도에 대한 긍정 비율은 100%로 나타남.
- 비례대표 여성할당제가 여성의 정치참여 기회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율이 90%를 넘어설 정도로 제도적 개선의 효과를 높게 인식하고 있음.

<표 22>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매우 미미함	미미함	그저 그러함	중요함	매우 중요함	계
빈도(명)	0	0	0	1	10	11
비율(%)	0	0	0	9.1	90.9	100

나.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효과

- 비례대표 여성할당제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과 더불어 이 제도의 효과에 대한 기대도 높게 나타났음. 즉 비례대표 여성할당제도의 개선으로 제주 지역에서는 7대에 2명이던 여성의원원이 8대, 9대에 각각 5명으로 증가하였음.

여성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려면 아직도 장벽이 있다. 정부, 정당, 사회 각층의 노력이 필요한데 비례대표 여성할당제가 있어서 그나마 여성들의 정치참여 확대에 기여했다고 본다. (의원 8)

-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 관련법이나 선거법에서 여성에게 일정비율 할당하는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 전 세계적으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높음. 즉 의회에서 여성의원원이 30% 이상을 차지하는 북유럽 국가들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음.

- 비례대표 여성할당제는 비례대표 의석이 협소(현 7석)하다는 견해가 있으며, 이 중 여성은 5명으로, 현재의 방식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지 못하기 때문에 비례대표의석을 증대시키는 것이 여성의 대표성 및 전문성을 높여준다는 인식이 있음.
- 지방의회 선거제도로 비례대표 여성할당제가 강화되고 여성후보 의무공천제가 강제조항으로 규정되면서 제주지역 역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하는데 기여한 것처럼 보임. 그러나 2010년 지역 선거구에서 당선가능성을 도외시키고 여성후보를 공천함으로써 역효과를 가져왔음.
- 이 제도는 일시적으로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데 효과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여성의 정치참여 증대 기여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봄.

현실적으로 남성중심사회에서 여성의 정계진출은 의무성이 부여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본다. 또한 지역구 출마 여성 후보자를 위해 여러 가지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병행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의원 4)

- 전문성을 가진 의원들이 진출하면서 비례대표로서 그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평이 있으나, 비례대표 의석의 확대와 더불어 지역구 여성의 원 확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임.
- 또한 제주지역의 현안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여성에 대한 비례대표제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음.

지방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당에 대한 사명감은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다고 본다. 반면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제주도의 현안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관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이를 보완하려면 각 전문가 영역에서 비례대표제도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원 7)

- 여성 후보자에 대한 제도적·사회문화적 여건이 불충분할 상태에서 비례대표 할당제는 의회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정치를 경험한 여성의 원들에 자신감을 부여할 수 있다고 봄.
- 따라서 비례대표 여성할당제가 여성의 정치참여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데, 만약 이 제도가 없으면 여성 스스로나 사회·정치·문화 자체가 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따라서 여성들의 노력과 투쟁이 제도와 환경이 서로 맞물려서 돌아갈 때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다고 봄.

7. 지역별 정당의 여성 의무공천제

- 제주지역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으로 여성 의무공천제를 묻는 질문에 매우 중요하다 10명(90.9%), 중요하다 1명(9.1%)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11명(100%)로 나타남.
- 이러한 응답률을 보더라도 여성 의무공천제가 여성의 정치참여 기회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로 인식하고 있어서 제도 개선의 효과가 높다고 봄.

<표 23> 지역별 정당의 여성 의무공천제도

구분	매우 미미함	미미함	그저 그러함	중요함	매우 중요함	계
빈도(명)	0	0	0	1	10	11
비율(%)	0	0.0	0.0	9.1	90.9	100

가. 지역별 정당 여성 의무공천제 지지 이유

- 여성 의무공천제 시행 결과 여성 후보가 당선되지 못했으나 우수한 여성인력들을 발굴하고 여성 정치인으로 능력을 개발하면 남성 후보와 경쟁력이 있고 당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 제도를 지지하는 경향을 보임.

○○제주도당은 지역구의원 여성후보를 3명 공천하면서 여성의 권익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여성 정치인을 양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여성 의무 공천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있었지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의무공천제를 실시하다 보니 당선 가능성이 있는 남성후보가 공천에서 탈락되어 탈당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처음 시행한 제도여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제도를 잘 보완하여 다음 선거에서는 여성 당선자가 나오길 바란다. (의원 2)

- 지역별 정당 여성 의무공천제는 여성의 정치적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정당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제도이므로 남성 중심의 정치에서 능력 있는 여성 정치인들의 정계 진출 확대를 위해서 여성 할당제 같은 제도적 장치와 함께 유권자들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음.

- 정치적 입지가 약한 여성 후보인 경우 정당을 벗어나서 무소속을 출마하기 어려우므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으로 정당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음. 이에 정당들은 공천 과정에서 여성후보자 공천에 대한 의지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하는 주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음.
- 이 제도가 정착된다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일 수 있고 여성 유권자의 여성 후보에 대한 지지가 가능해짐에 따라 여성에 대한 정치적 정보와 정치참여 기회가 활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음.

여성의무공천제도는 공정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지역구에서 여성 후보자 한 명을 당선시키겠다는 의지와 노력을 기울이면 이 제도는 효과를 거둘 것이다. (의원5)

- 또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통한 여성의무공천 확대는 여성의 지역구 당선 가능성을 높이게 되어 경쟁력 있는 여성의 의회 진출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음.
- 따라서 여성의무공천제도의 확대는 필요하나 여성의 지역구 출마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중선거구제로 선거구제를 개편하고, 여성 지방의원 후원회제도 도입 및 여성 후보 완전선거공영제 실시 등과 같은 선거제도의 개혁이 병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음.
- 즉 제주도당(정당)내에서 유권자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어 대표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표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며, 지역별 정당 여성의무공천제 비율 30%를 보장해서 여성들의 정치참여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음.
- 제주도당(정당)내에서 정치적 의결권을 가진 여성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당내에서 여성의 권익이 약화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여성의무공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 확산되고 있음.
- 여성은 소수이고 약자이므로 여성의무공천제를 통해 더 많은 여성들을 정치에 참여시켜야 함을 지지 이유로 들고 있으며, 제도적으로 여성 정치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 지배적임.

나. 지역별 정당 여성의무공천제가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

- 이 제도의 단점으로는 여성 후보자에게 의무공천을 해 주는 것으로 끝나고,

여성 후보자가 당선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마련해 주지 못함으로써 의무공천을 해 줘도 남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들고 있음.

- 특히 2010년 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 제도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시행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권고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이어서 불협화음이 있었음. 따라서 여성 후보자를 의무공천한 경우 자신들의 지역구에서 준비한 남성 후보자들이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되자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실패이유가 내재되어 있다고 봄.
- 소선거구제 하에서 지역구 여성의무공천제는 여성과 남성 후보의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게 보이며, 지역별 정당 여성할당 의무공천은 지역구 남성 의원의 선거등록을 위한 수단으로 전략하였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함. 즉 각 당의 전략 지역은 남성을 주로 공천했으며, 비전략 지역구 혹은 남성 후보가 없는 지역에 여성을 강제로 공천한 결과 여성의무공천제 제도의 실패가 표출되었음.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해 여성의무공천제가 바람직한 제도이긴 한데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오히려 그게 악용이 돼서 여성에게 족쇄가 되었다. 정당 내부의 이해타산에 의해 여성이 출마하려는 지역구가 이미 남성 후보자로 정해져 있는 가운데 전혀 생소한 곳에 가서 출마하라고 하면 당선이 매우 희박하다. 여성으로서 자기 지역구에서 나와도 힘든데 전혀 다른 곳에서의 경선은 여성 후보에게 희생양이 되라는 것이다. (의원 5)

-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이는 여성후보 공천에 대한 정당들의 자발성과 법적 강제규정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여성의 정치참여에 효율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임.

8. 사회문화적 관점

가. 사회문화적 관점의 참여제약 요인

1) 개인적인 측면

- 여성의 정치참여 제약 요인 중 개인적 측면을 들여다보면 여성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 부족을 들 수 있음.

제주지역 여성 정치참여를 저해하는 사회문화적 요인으로는 아직도 여성정치인에 대한 신뢰도가 부족하다. '여자가 정치를 제대로 할까?'라는 생각이 지금도 유권자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 남성들의 무시와 여성들의 경계심도 한몫하고 있는 것 같다. 무엇보다도 집안의 여건조성이 중요하다. 만약 아내나 며느리가 정치에 뛰어든다면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는 가족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든다.(의원 1)

- 다음은 정치는 남성의 영역, 가정은 여성의 영역으로 간주하는 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남아있는 남성중심의 문화환경을 들 수 있음.

남성중심의 정치문화, 여성의 정치적 무능력을 고집하는 사회분위기, 여성 자신의 정치적 무관심으로 여성 정치에 대한 고정관념이 형성되었다고 본다.
(의원 4)

- 또한 여성정치인에 대한 가족들의 지지와 호응이 낮은 점과 여성의 육아가 사 등이 여성의 정치참여 제약 요인이라 할 수 있음.

가정의 공동체를 깨고 나오기 힘들다. (의원 10)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일하는 여성이 많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은 고정되어 있다. 사회에서 남성들과 똑같이 일하고 집에 가면 남성들은 쉬지만 여성들은 집안일에 육아까지 담당하고 있어서 가족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으면, 여성이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 또한 정치는 싸움이나 투쟁과 같은 이미지인데 남성과 경합을 해서 과연 이길 것인가 라는 믿음직스럽지 못한 심리도 작용한다. (의원 5)

여성들은 정치참여의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적인 환경을 익히는데 어려움이 있다. 여성의 정치활동에도 육아와 가사와 같은 일 가정 양립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 말고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여성 정치인이 안고 있는 문제이다. (의원 4)

2) 사회적 측면

- 여성의 정치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사회적 측면에는 여성정치인에 대한

소극적인 신뢰도, 분야별 전문적인 여성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낮은 인지도, 혈연·지연·학연에 약한 연고성 등이 있음.

제주도는 다른 지방에 비해 연고주의가 3배나 더 높다. 여성정치인은 연고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3배의 노력을 하고 남성정치인보다 열심히 해야 한다. 또한 뿌리깊은 권당문화가 여성정치인들이 활동하기에 어려운 여건이다. (의원 10)

여성의원이기에 다소 약하게 보는 시각 등 사회가 안고 있는 선입견을 극복해야 한다. (의원 4)

- 이외에도 여성유권자의 정치적 무관심이 사회문화적 제약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음.

우수 여성인력 발굴 및 양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성들의 정치적 관심이 부족하다고 본다. 즉 여성 문제를 가장 잘 아는 것이 바로 여성이나 여성정책 관련 의제에 대해 여성유권자들의 실질적인 논의가 부족한 편이라 본다. (의원 2)

여성 유권자의 정치적 무관심 또는 높은 정치 혐오감이 있다고 본다. (의원 4)

3) 경제적인 측면

- 여성의 정치참여 제약요인으로 개인적, 사회적 측면 외에도 선거비용 등 자금력 확보의 한계 등 경제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는 점이 제기됨.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하는데 선거활동에 필요한 자금력과 지지도가 문제인 것 같다. (의원 1)

- 이상으로 제주지역의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면접조사 결과 정당의 역할, 법·제도적 개선 등 여러 요인이 있으나 시급히 추진 가능한 것으로는 선거제도의 개선 사항을 들 수 있음.
- 이에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0년) 결과를 토대로 하여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취해야 할 제제 조항을 들면 다음과 같음.

- 할당제를 지키지 않은 정당에 대한 제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공천제도 운영의 문제점 보완이 필요함. 즉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후보 공천은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시행하는데 여성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공천제도가 될 수 있음. 의무공천제도가 갑자기 시행되면서 여성 후보자들은 지역의 기반이 없거나, 유권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여성 정치인들이 경선절차를 밟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봄. 정당들은 여성 후보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기는 했으나 조그마한 가산점으로는 취약한 지지기반과 인지도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음.
- 정당이나 정치권에서 여성의 정치적 세력화가 필요하므로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도 정당내에서 여성 정치인들의 세력화가 형성되지 않으면 발전하기 어렵다고 봄. 여성 정치인들의 정치적 세력화가 형성되려면 동일 정당 출신 여성정치인이 여러 명이 있어야 함. 지금처럼 비례대표 진출 도의원(한나라당 2명, 그 외 정당 1명) 수효로는 여성 정치인의 세력화가 요원하다고 봄.
- 결론적으로 여성 정치란 여성들을 위한 정치이며 정치권 등 사회 전반에서 이런 인식이 필요하나 정당을 초월하여 여성의원들이 연대하여 여성들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봄.

9. 분석 결과 시사점

- 제주지역의 여성 정치참여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현직 여성도의원 11명(국회의원 1명 참조)의 생생한 선거 경험을 통하여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에 필요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여성의 정치참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 정당이 여성의 정치참여를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지 않고 있음. 제주도당은 중앙당에 비해 여성의 정치참여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역할이 더 작다고 인식함.
- 정당차원에서 여성의 정치참여에 기여한 역할이 미미한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정당차원의 개선노력이 보장될 필요가 있음.

- 제주도당 차원의 역할이 더욱 낮게 평가되는 것은 제주도당이 여성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지역차원에서 보이지 않음을 지적한 것임.
- 정당 내 여성에 대한 배려가 형식적인 차원에서만 이뤄지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의사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비율을 제주도당차원에서도 강제할 필요가 있음.
- 정당 내 여성정치인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단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효과를 가늠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미미함.
- 여성의 정치참여를 높이기 위한 법·제도적인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며, 비례대표 여성할당제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인식하고 있음. 여성의무공천제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입장임.
- 법·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기 때문에 현행 비례대표 여성할당제와 의무공천제는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현시점에서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여성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요인들이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인식함.
- 정당의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각기 단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여성정치인 양성프로그램들을 정규적으로 정당과 정파를 초월하여 교육과 훈련을 할 수 있는 단일한 플랫폼이 필요함.
- 여성정치아카데미는 여성정치지도자 양성을 위한 기초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과정의 심화를 통해 전문적 여성정치인을 양성하여 대안적 여성정치지도자를 배출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음.

IV.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

1. 정당별 당헌·당규를 통해본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

- 이 절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비례대표 여성도의원 당선자 소속 정당(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의 당헌·당규를 중심으로 하여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방안을 살펴보고자 함.

가. 한나라당

- 당헌을 보면 당원의 권리와 의무 조항에서 선거인 구성 시 여성에게 50% 할당, 각종 선거의 후보자 추천시 여성을 30% 배정, 주요 당직 및 각종 위원회 구성시 여성을 30%로 할당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음.
- 당규를 보면 대의원 중 50%는 여성에게 할당하고 있으며, 제3장 제15조에는 여성할당을 위한 조항이 있음.

나. 민주당

- 당헌을 보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당원의 지위와 권리를 배려함.
- 대의원에는 여성당원이 30% 이상 포함되도록 제정함.
- 당규를 보면 전국여성위원회의 지위를 알 수 있는 조항들이 있고, 특히 여성 리더십센터가 설치되어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다. 민주노동당

- 당헌을 보면 여성당원의 지위와 권리를 확보해 주기 위해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30% 이상을 할당하도록 정해짐.
- 제8장 공직선거에서는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는 당원직선으로 선출하고, 여성에게 50% 이상을, 장애인에게 10% 이상을 할당함.

- 광역 비례대표의원 후보는 당해 시·도당 당원들의 직선으로 선출하고, 여성에게 50% 이상을 할당하도록 함.
- 당규를 보면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음.
-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광역의원 선거별 출마 후보의 30% 이상을 여성후보에게 할당함.

라. 국민참여당

- 당헌·당규를 보면 여성들의 정당활동과 정당에서의 위치 등을 명시하고 있음.
 - 제10조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선출 당직자의 30% 이상을 여성에게 할당하고 있음. 원내대표 선출 시에 여성후보자 당선을 위한 장치를 마련함.
 - 제39조에는 주요 당직에서 여성에게 30% 배정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 당헌에도 여성위원들의 지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준비되어 있음.

마. 정당별 여성당원 지원제도 실천 방안

- 이상으로 우리나라 4개 정당의 당헌과 당규를 중심으로 하여 여성당원들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한 노력 정도를 살펴보았음. 법·제도적으로는 여성당원들의 적극적 참여방안이 완벽하게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시행여부는 정당에 따라 다르므로 정당 차원에서 제도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필요함.
- 제주지역의 여성 정치참여 활성화 방안으로 정당의 제도를 논의한 것은 정당의 역할에 따라 시·도당으로 전파된다고 보았으며, 결국 여성의 정치참여가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 때까지 여성들을 위한 당헌·당규에 권고사항이 아니라 강제조항을 신설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임.
-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여성의 역량강화, 유권자의 인식 변화, 제도개선 등은 필요충분조건이며, 이에 더하여 여성당원들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당의 역할이 중요함을 살펴보았음.
- 정당정치를 표방하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여성의 정치참여 방안은 정당이 해

법을 갖고 있다고 봄. 이는 정당의 모든 조직에 여성당직자를 임명하여 여성의 지도력을 강화하고, 여성 정치인을 발굴하고 양성하는 방안 있기 때문임.

- 또한 여성정치발전기금은 반드시 목적 사업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여성추천보조금 등은 여성후보의 선거자금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선거운동에 필요한 조직활동비로 사용하도록 강제규정이 시행된다면 여성의 정치참여는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임.

2. 제주지역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

- 여성들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며, 이는 여성의 정치적 주체의식이 확고해야 함.
- 비례대표여성할당제, 여성의무공천제의 비율 확대 등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기된 문제들로 지방선거에도 적용되며, 이는 여성들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에 직접적인 요인이 되므로 이를 참조하여 제주지역의 여성 정치참여 확대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 정치자금법에는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제도가 있어서 여성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당해 연도 예산에 계상된 여성추천보조금의 50%를 각 선거의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으로 지급받게 되어 있음. 또한 정당에서 받은 경상보조금 중 10%는 여성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등 법적 제도에 불구하고 여성의 정치참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이를 위해 3장에서는 비례대표 여성도의원들의 선거경험을 정리했으며, 4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을 살펴보고자 함.

가. 여성 네트워크 구축과 활용

-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전·현직 여성정치인과 공무원들의 교류 증진과 협력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임.

전·현직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의원, 여성단체장들과 교류를 더욱더 늘리고 아카데미 및 정치교육 행사를 많이 하여 보다 더 높은 정치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연대활동을 펼쳐야 한다. (의원 3)

- 또한 여성 간 업무협력 네트워크 활용을 통해 여성의 정치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고 봄.

여성의원과 여성단체의 상설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한데, 여성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등을 통해 간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의원 4)

또한 제주도내 여성지도자(정치인) 연대모임을 추진하고, 여성주권 향상을 위한 토론 모임 추진, 여성문화예술인들과의 교류 증대, 장애인여성 및 이주여성 지도자 발굴 및 정당 활동 추천을 통해 여성의 권익향상 추진 등 여성 정치인 양성을 위한 다양한 공론의 장 마련이 중요하다. (의원 4)

나. 각급 선거 시 여성 후보자를 위한 재정적 지원

- 지방자치제도 부활로 입후보를 통한 여성의 정치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나 여성후보자를 위한 선거자금 지원 등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봄.

여성후보자들에게 대한 선거자금 지원제도화와 정당차원에서 여성후보자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의원 3)

- 외국의 여성정치운동단체들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해 여성 후보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미국의 에밀리즈 리스트(EMILY'S LIST)는 연방이나 주 차원의 선거에 나서는 민주당 여성후보를 발굴·지원하는 조직으로 활동하며, 선거자금도 모금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특정 정책 이슈에 동의하는 여성후보 지원). 영국의 '300인 클럽'(Woman Three Hundred)은 하원에 여성의원 수가 300명이 되도록 당선을 목표로 여성 후보와 연대하고 있음. 또한 일본의 '윈윈'(WIN WIN-Women in World, International Network)은 국회의원이거나 단체장을 목표로 하는 여성을 지원하는 모금 네트워크로 여성 후보 중에서 지원할 여성을 뽑아 1계좌당 1만엔(10만원)씩 모은 자금을 기부하는 등 국가에 따라 여성 후보자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제도하고 있음(『한겨레21』 제281호 참조).

-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지방의원 선거시 여성후보자를 위한 선거자금 모금운동과 재정적 지원방안을 참조할 수 있음.
- ○○정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여성 후보에게 선거자금 일정금액이 지원되고 있으므로 다른 정당에서도 이런 점을 수용하도록 여성당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음.

남성위원이 세액공제 같은 것을 선거기간에 모집을 하면 그 중 10%든 20%든 여성지역구 후보에게 지원하게 되어 있다.

도시근로자 임금이 280만원이다. 280만원이 되면 이외에 것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30%. 280만원이 넘으면 총 의정활동비에서 30%, 비례대표는 30%이고, 지역구 의원은 70%를 낸다. 그 대신에 우리가 공천할 때 내는 금액은 선관위에 300만원만 내면 된다. (의원들)

- 국가발전과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데 여성 정치인 비율이 중요하므로 여성들의 정계 진출 유도 정책으로 여성후보에 대해서 경제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임.

전문직에 따라 자신들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나오면 공동으로 선거비용을 해 준다. 이런 점은 정당차원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의원들)

다. 정당(제주도당)의 실질적 지원

- 여성후보자를 위한 선거법이 개선된다고 해도 정당 차원에서 실질적인 지원 제도가 강화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견해가 있음.

여성당직자 30% 이상 배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만 중요한 요직에는 10%도 되지 못하고 있다. 즉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마련이 되었지만 당의 의지가 부족하다.

정당은 여성들을 자신들의 선거운동에 도움을 받았으나 그에 상응하는 예우는 잘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의원들)

- 또한 정당법의 규정을 사문화할 것이 아니라 여성당원들은 적극적으로 당헌과 당규를 파악한 후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규정대로 시행되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음.

여성당원들은 당헌과 당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권리를 찾지 못하기도 한다. (의원들)

라. 여성계의 지각과 단결

- 여성지도자 양성이 미래의 여성 후보자를 지원하는 것이며, 또한 여성의 정치적 세력화의 주요인으로 여성들의 조직적인 연대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여성들의 정치참여확대를 위해서 여성계 쪽에서도 적극적인 연대와 동참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음.

중선거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하는데 여성계의 전략이 필요하다. (의원들)

전현직 국회의원, 지방의원, 여성단체들과 협력하여 여성정치인들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의원 3)

- 여성이 여성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음.

유권자 50%가 여성인데 제주지역 여성 도의원이 몇 명이나 되는가? 여성 정치참여 확대 방안을 말하기 전에 우리 여성들이 여성들을 아끼고 보살피며 여성들이 단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반성해야 된다. (의원들)

- 여성들은 나의 대변자라고 생각하고 여성을 지지하는 마음을 유도하고, 인식의 변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정치의식 개혁 교육을 지속적으로 펴 나아가야 진정한 남녀평등한 대의정치를 펼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음. 따라서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해 여성들의 연대가 필요함.

- 민주주의사회에서 정당과 사회단체를 만들어 그 집단의 주장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는데 비하여 여성들은 여성권익을 위해 결집된 공동체의식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음.
- 정치인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아직도 남성의 영역으로 인식하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여성정치인에 대한 인식 부족, 여성에게 불리한 선거제도 등을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역사회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고 봄.
- 제주지역에서 여성유권자들만이라도 여성에게 정치적 대표성을 부여해야 하는 당위성을 홍보하고, 지역 정책에 의사결정 권한을 가질 수 있어야 함. 즉 유권자는 투표행위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고, 선거운동원으로 참여하고, 정치인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음. 대표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여성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후보를 지원하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어야 함을 알 수 있음.

마. 법·제도 개선

- 제주지역은 인구수에 비례해서 광역의원 선거시 중선거구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특별자치도 특별법으로 가능성 여부 타진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음.

기초의원선거는 중선거구로 되어 있다. 3명을 뽑아야 하면 1명은 여성이 선출이 되어야 하는 중선거구가 기초의회에서는 시행되고 있는데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구마다 광역 편성이 되면서도 기초의회가 없어진 부분에 대해 중선거구제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법제도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각 정당에서 요구해야 될 것이다. (의원들)

- 여성들은 정치참여 확대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하고, 현행제도로는 불가능하지만 남녀 1인씩 2인을 선출하는 선거구제를 추진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있었음.

3. 여성 정치지도자 양성 방안

- 여성의 대표성을 고려한 민주적인 선거제도의 확립과 정당의 여성 참여율을

설정하고 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은 물론 여성의 정치적인 지도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여성의 정치 세력화에 기여하는 방법이라 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치지도자 양성 방안을 살펴보고자 함.

가. 제주지역의 여성대학 운영 현황

- 다음 <표 24>는 정당별 제주도당에서 시행했던 여성정치아카데미 운영 현황임.
- 한나라당은 지방선거와 총선 전에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은 2010년~2011년 1회 교육하였음. 그 외 정당은 중앙당 차원의 교육과정에 동참한 정도임.

<표 24> 정당별 제주도당 여성 정치 아카데미 운영 현황

정당	여성 정치 아카데미 내용
한나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05년 3월 ~ 2007년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기 : 2005. 3. 9(수) ~ 4.13(수) - 6주간 - 제2기 : 2005. 5.11(수) ~ 6.15(수) - 6주간 - 제3기 : 2005. 10.11(화) ~ 11.15(화) - 6주간 - 제4기 : 2007. 3.14(수) ~ 4.11(수) - 6주간 ● 대상 : 제주도민(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기 : 85명 - 제2기 : 121명 - 제3기 : 100명 - 제4기 : 85명 ● 내용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1일 2강좌) ● 주최 :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회, 한나라당 제주도당 ● 주관 : 한나라당 제주도당 여성위원회, 차세대여성위원회
민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당에서 아카데미를 운영하지 않음.
자유선진당, 국민참여당 (합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당에서 관리 ● 제주도당에서는 아카데미 운영 없음. ● 중앙당에서 개최하고 '제주도위원장'이 참석함.
민주노동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11년 7월(1회, 1박 2일) ● 대상 : 당원 70명 ● 장소 : 아로마리조트

정당	여성 정치 아카데미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 '2012년 선거 대비 여성의 정치참여', '비정규 여성노동자들의 현실' • 비고 : 여성위원회 자체에서 하는 것은 한 달에 한번(비공식적)하고 있음
창조한국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12월에 개최 예정 (미확정)
진보신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당에서 운영하는 아카데미 교육 참가
국민참여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대상 토론, 강연회 개최. (여성위원회 사업) • 2010~2011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11년 11월 19일 • 대상 : 당원 22명 • 장소 : 도당 회의실에서 • 내용 : 자유로운 글쓰기와 소통하는 토론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10년 11월 25일 • 대상 : 당원 50여명 • 장소 : 웰컴센터 • 내용 : "이동복지의 현재와 미래"토론 (토론회)

- 미래연합, 사회당, 친박연합, 평화민주당 등은 제주도당이 창당되지 않아서 도당차원의 교육 실적이 없음.
- <표 25>는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주관한 여성대학 운영 현황임.
 - 제주시 주최로 운영되는 여성대학은 1999년부터 2011년 지속되고 있으며, 리더십 중심의 교육을 하고 있음.
 - 서귀포시에서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제주의 역사·문화, 리더십 중심의 교육을 하고 있음.

<표 25> 여성대학 운영 현황

	연도(년)	운영현황
제주시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기간 : 2011. 3. 8. ~ 12. 20. • 교육장소 :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 교육내용 : 교양, 리더십, 제주역사 및 논문발표, 자원봉사 등 체험 및 실습 강좌 병행 실시

	연도(년)	운영현황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기간 : 2010. 3. 9. ~ 2010. 12. 14. • 교육대상 : 100명(수료인원 84명) • 교육내용 : 리더십, 화술, 재테크, 건강 등 교양강좌 		
	1999~2010	수료인원	1999년 ~ 2004년	403명
			2005년	64명
			2006년	64명
			2007년	81명
			2008년	93명
2009년	86명			
서귀포시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기간 : 2011. 6. 29. ~ 8. 26. • 교육장소 : 탐라대학교 • 교육대상 : 243명 • 교육내용 : 제주역사, 전통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기간 : 2010. 6. 25. ~ 8. 20. • 교육장소 : 탐라대학교 • 교육대상 : 286명 • 교육내용 : 녹색생활, 건강(식생활), 문화체험, 리더십 향상 등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기간 : 2009. 5. 29. ~ 8. 7. • 교육장소 : 탐라대학교 • 교육대상 : 254명 • 교육내용 : 의식개혁, 리더십 향상, 교양 및 경제분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여성가족과,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내부자료 참조.

- 제주도당과 지방자치단체 외에 시민단체별로 운영되는 여성정치지도자 교육 과정이 있음.

나. 여성정치아카데미 운영 방안

- 제주지역에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낮은 이유로는 여성유권자의 인식변화, 대표성을 부여하고 싶은 여성정치인의 부족, 여성 정치참여에 대한 정당의 소극적 태도, 여성 정치지도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기회 부족 등 법·제도적 요인과 정치 환경의 부족 등을 들 수 있음.

- 따라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여성의 정치참여를 저해는 요인들을 개선하고 여성의 정치적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고 ‘여성정치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속적·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제시하고자 함.
- 여성정치아카데미를 활용하여 직·간접적으로 정치경험의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제주지역이나 정당 차원에서 여성정치아카데미 등을 개설하는 방안이 있으며, 여성 정치지망생들이 자의적, 타의적으로 동참하도록 강력히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또한 이러한 교육을 통해 여성 후보자를 발굴·양성하며, 지역사회의 문제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봄.
- 여성아카데미에서 수행해야 할 요건으로는 교육을 통한 여성정치인 양성, 여성 간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제 구축, 네트워크의 정착을 통한 업무 협력, 여성정치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이 있음.
-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여성아카데미 수행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여성아카데미 프로그램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관리운영기관 설립을 목표로 설정해서 운영함. 이를 추진하기 위해 단기적·중기적·장기적 목표 설정이 바람직하다고 봄.
- 따라서 여성아카데미의 교육 목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단기·중기·장기적인 목표와 주요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1) 단기 목표와 내용

- 여성아카데미 프로그램의 정규화를 목표로 함.
- 운영 내용으로는 임시적으로 정규 프로그램을 지향하는 임시관리운영기관을 지정하고, 여성정치인들의 정기모임을 기반으로 한 시민사회의 여성지도자를 수강생으로 모집하는 방안이 있음.

2) 중기 목표와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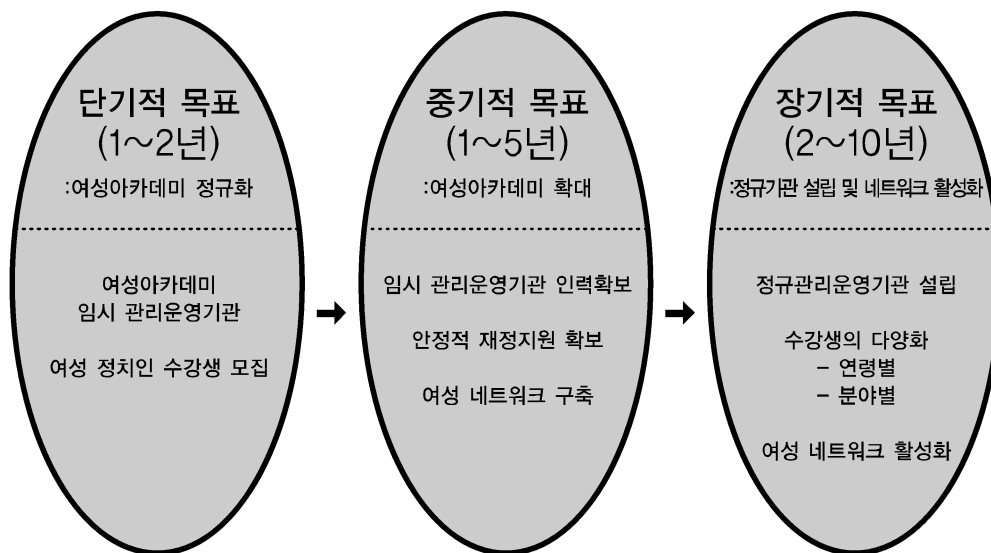
- 여성아카데미 프로그램의 확대를 목표로 정함.
- 운영 내용으로는 임시관리운영기관의 인력충원 확대, 안정적 재정지원을 확보, 여성 네트워크 구축 등을 들 수 있음.

3) 장기 목표와 내용

- 여성아카데미 프로그램 정규 교과과정 설립과 여성 네트워크의 허브기능을 목표로 정함.
- 운영 내용으로는 정규 관리운영기관 설립, 수강생의 다양화 선정에 둠. 이에 연령별(중고등부 여성 지도자 수강생, 대학부 여성지도자 수강생, 일반 수강생), 분야별(사회, 문화, 경제, 교육, 환경, 관광) 차별적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여성 네트워크 활성화에도 역점을 둠.

4) 여성아카데미 프로그램 정착을 위한 과제

- 여성아카데미 운영에 필요한 단기·중기·장기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프로그램 정착을 위한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재정지원의 현실화, 여성아카데미 설립 추진에 대한 정치적 지원 현실화, 여성 정치인들의 참여의지, 교육과정의 만족도, 여성아카데미를 객관적·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구선정, 교육 대상자 발굴 및 참여 유도 정책의 현실화 등을 들 수 있음.



<그림 1> 여성아카데미 운영 목표

5) 여성아카데미 교육 방법

○ 강연

- 여성아카데미 주제에 대한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연하거나 담당교수를 배정함.

○ 워크숍

- 여성아카데미 수강생들과 여성 정치인들은 아카데미 상기 주제에 대한 의견을 종합 토론함으로써 개선방안에 대한 실행계획을 각자 수립하여 공유함. 또한 실행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종합 토론하여 집단적 실행계획을 도출하도록 함.

○ 세미나

- 여성아카데미 주제 관련 강연을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연하고 다양한 시각을 대변할 수 있는 토론자를 통한 집중토론을 거쳐 수강생 질의까지 수용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함.

○ 모의회의

- 모의국회, 모의의회, 모의선거토론회, 모의국정감사, 모의행정감사를 통해 직접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함으로써 여성들의 협력을 통한 결의안을 도출하는 능력을 배양함. 가족들이 언론, 시민단체, 청중의 역할로 참여하여 여성 정치인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로 제공해 줌.

○ 여성캠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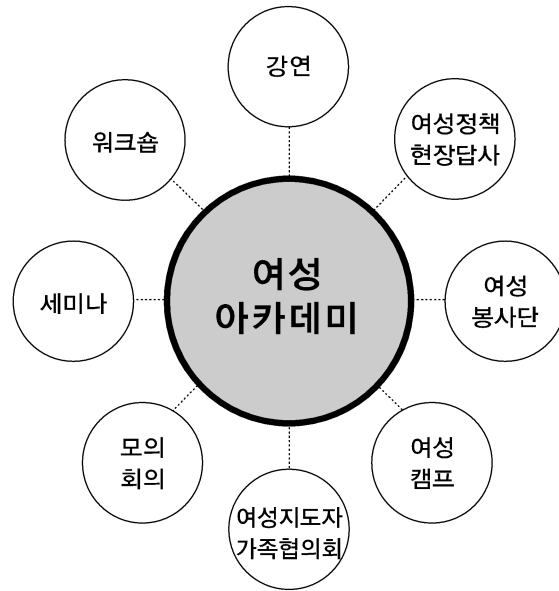
- 여성들만의 공동체생활을 경험하면서 여성 정치인들과 시사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갖고 대안을 모색하면서 여성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여성정책 현장답사

- 여성운동 신장에 영향을 준 현장을 답사하여 여성권 향상을 위한 여성정치인 양성 필요성을 학습하고 집단적 경험을 통한 여성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유도함.

○ 여성 봉사단

- 재난지역에 여성 봉사단을 파견함으로써 여성들의 위기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남성 위주의 대응이 갖는 한계점을 파악하여 대안제시 능력을 함양하는 계기를 마련해 줌.



<그림 2> 여성아카데미 교육 방법

- 여성지도자 가족협의회
- 여성 정치인들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가족내 여성의 정치활동이 가족에 미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조사하여, 공유하고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지원 방안을 협의함.

다. 여성 정치지도자 양성의 원칙

1) 경험주의적 접근

- 기존 여성 정치인들이 경험한 한계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경험을 통한 해결방법을 모색함.
- 기존 여성 정치인들이 네트워크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인프라로 구축함

2) 경험의 공유와 확대

- 여성아카데미가 여성 정치인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경험을 통한 대안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 해결방법을 제시하여 이를 더욱 많은 여성지도자들이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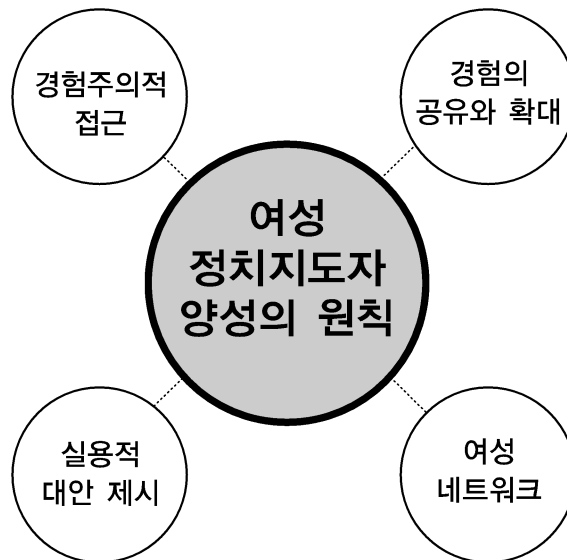
- 경험기반 네트워크를 통해 현실적 문제해결에 여성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함.

3) 실용적 대안 제시

- 여성관련 정책뿐만 아니라 아닌 현실정치 의제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 실용적이고 적극적 대안을 여성지도자 입장에서 협의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대안을 공유하고 홍보함으로써 실용적 대안제시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킴.

4) 여성 네트워크

- 여성 네트워크의 활성화로 여성의 취약한 연고성을 극복하고,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네트워크의 효용성을 강화함.
-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정치훈련과정이 필요함. 즉 정당별로 여성당원을 위한 교육과 유권자 등 시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정치적인 요인들을 전파하는 역할이 필요함. 정당은 예비 여성정치인 양성을 위해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특히 여성당원 교육에 역점을 두는 것이 중요함.



<그림 3> 여성정치지도자 양성 원칙

- 다음은 여성아카데미 교육방법에 따른 여성정치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살펴보고자 함.

라. 여성 정치지도자 양성 교육과정

- 여성성과 정치
 - 여성성이 정치활동에 한계를 갖는다는 편견을 극복하게 함.
- 여성 차별과 개선 방안
 - 여성이 약자로서 보호받지 못한 차별이 정치를 통해 개선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부각시킴.
- 여성과 정치담론
 - 남성과 여성이 정치영역의 정보인지와 활용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편견을 극복하고 정치담론에서 근본적인 성차이가 논쟁의 참여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왜곡된 것이라는 것을 밝힘.
- 여성 리더십과 개혁
 - 여성의 리더십이 정치·사회변혁을 일으킨 사례를 공유하고 이러한 리더십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습득함.
- 여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활용
 - 여성의 정치참여를 높이기 위해 여성들 간 협력증진 방안을 모색함.
- 여성 정치인과 가족
 - 여성 정치인이 가정에서 맡는 어머니, 아내, 딸 역할과 정치 공인으로서 활동하여 평가받게 되는 역할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가족 구성원들의 협조를 통한 여성 정치인의 양성이 곧 건강한 가족문화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줌.
- 정당론과 여성
 - 정당의 기능에 대한 이해와 함께 여성들은 정당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여성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이해함.

- 정치과정론과 여성
 - 국회와 도의회의 의사결정과정을 이해하고 여성이 이 과정에서 여성권을 향상시키면서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알게 함.
- 공공정책과 여성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공정책 결정 과정을 이해하고 여성이 이 과정에서 여성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알게 함.
- 여성운동사와 정치참여
 - 여성운동의 역사를 이해하고 현 시점에서 여성의 정치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파악함.
- 여성 정치와 선거자금
 - 여성 정치인의 양성을 위한 현 선거자금 모금방법을 이해하여 여성 정치인에 대한 선거자금 지원방안을 모색함.
- 이상으로 여성 정치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보면 여성에 초점을 두고 설정했으나 점진적으로 성별을 초월하여 정치와 사회 전 범위를 교과과정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또한 여성 정치지도자 양성을 위해 정당과 도당에서는 목적에 맞게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연구기관과 시민단체 등 초당적 기관에서 포괄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제주지역의 정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봄.

V. 결론 및 향후 과제

1. 결론

-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됨에 따라 1995년 6월 27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행된 후 제주지역의 여성 정치참여 정도와 확대 방안 등을 살펴보는데 연구 목적을 두었으며, 논의를 전개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진출 비례대표 여성도의원 15명을 심층면접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음.
- 심층면접 내용은 '제주지역 여성의 정치참여, 정당적 관점, 법·제도적 개선,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지역별 정당 여성의무공천제, 사회문화적 관점' 등을 주 영역으로 하여 세부 내용을 조사하였음.
- 또한 여성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데 직접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입후보를 통한 정치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국내의 여성 정치참여 현황을 통해서 제주지역의 현황과 비교해보았음.

1)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필요

- 남성중심의 정치문화, 여성과 정치의 관련성에 대한 고정관념 등으로 여전히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노력은 만족할 만한 성과를 가져오고 있지 못함. 또한 선거구 범위가 넓어지고 선거비용도 증가함에 따라 자금력·조직력에서 취약한 여성들이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아직도 많은 해결과제를 안고 있음.
- 제도적인 측면이 여성의 정치참여를 저해하고 있으며, 현재의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여전히 여성의 정치참여 유도를 할 수 없음. 따라서 중·대선거구제의 도입이 필요하며 중·대선거구제에서 여성의 당선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음. 또한 여성 할당제의 확대로 성차별 해소와 정치적 과정에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최소 15%에 이르러야 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 노르웨이나 스웨덴에서도 여성할당제로 정치인들의 부패방지 등의 효과로 매년 점차적으로 여성할당제 비율을 높이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의 정당을 살

펴보면 여성이 전체 당원의 최고 70%까지 차지하는 등 수적으로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고위당직자는 극히 적어 당 정책결정자로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움. 따라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당법에 정당은 각급 공직선거에서 여성의원의 비율이 40%에 이를 때까지 일정 비율의 여성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봄.

- 앞에서 제주지역의 여성 정치참여 현황을 살펴본 결과 여성인구가 남성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투표참여가 저조하며, 국회의원, 도의원 입후보자 및 당선자 비율도 남성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음. 이는 선거 전반적으로 구조적인 문제점도 지적되지만 사회 전반에 걸친 의식의 문제로 보임.

2) 비례대표 여성할당제의 확대와 여성의무공천제 추진

- 현재 전체 지역구 대비 여성의원의 진출이 매우 저조함을 감안할 때 지역구의 여성의원의 비율이 일정한 수준에 이를 때까지 비례대표직의 여성비율을 상향조정 해야 할 것임.
- 또한 소수의 여성들로는 남성들이 우세한 정치권에서 정책결정 순위에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어 내지 못하며, 정치적 과정에서 효과를 내기 위해 여성비례대표 할당 50%와 선출직 여성할당 30%가 추진되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음.

3) 정당제도의 개혁과 정당 내 민주주의 확보

- 당선 가능한 지역에 여성을 30% 이상 공천하고 비례대표에서는 유권자 성비에 따른 균등한 할당제 공천이 요구되며 여성후보자 선거지원 활동을 대폭 강화 등 당내 민주주의 확보가 필요함.

4) 사회전반의 의식개혁 필요

- 많은 여성들이 다른 소수 집단과 마찬가지로 권력관계를 비롯한 사회, 경제 등에서 낮은 지위에 머물러 있고, 또 이를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성 자신들의 자각이나 각성 등 의식의 전환은 물론 생활 속에 용해되어 있는 불평등은 물론 소외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보다 조직적·적극적·실천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 여성문제의 해결은 소수 여성단체만의 노력으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먼저 여성 스스로의 각성을 통해 참다운 자기를 찾는 의식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분산된 여성의 힘을 효과적으로 조직화하여 여러 통로에 있어서의 정치참여의 폭을 넓혀야 함.
- 그리고 현재까지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가정의 복지와 사회의 발전에 대한 여성의 지대한 공헌, 모성의 사회적 중요성 및 가정과 자녀양육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과 아동의 양육에는 여성 및 사회전체가 책임을 분담해야 함을 인식해야 함.

5) 여성 정치지도자 양성 필요

- 지도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지는 것이므로 제주지역에서도 여성정치인을 양성하려면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인재를 발굴하고 훈련에 주력하는 것이 급선무임.
- 여성 정치지도자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여성정치인 양성이 핵심 요소이나 여성 간 협력체제 구축과 네트워크의 정착을 통한 업무협력이 필요함.
- 여성 정치지도자 관련 교육프로그램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의 현실화, 여성아카데미 설립 추진에 대한 정치적 지원 현실화, 여성 정치인들의 참여의지, 교육과정의 만족도, 여성아카데미를 초당적·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구 선정, 교육대상자 발굴 및 참여 유도 정책의 현실화 등을 들 수 있음.
-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게 거론되는 여성아카데미 교육방법으로는 대개 강연, 워크숍, 세미나, 모의회의, 여성캠프, 여성정책 현장답사, 여성 봉사단, 여성지도자 가족협의회 등이 있음.
- 제주지역에서는 여성의 정치지도자 양성을 위해 주로 ‘정치아카데미, 여성대학’ 등이 운영되었지만, 향후 지속적·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함. 즉 정당별 ‘아카데미운영’은 각계각층의 인력을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파를 초월하여 ‘여성정치아카데미’ 운영 주체가 되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단계별 운영이 가능하도록 협력과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함.

- 기성세대를 위한 정치아카데미 운영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차세대 여성지도자 양성에 인적·물적 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적어도 제주지역의 10~20대 청년들의 정치참여 계기 마련, 여성들의 정치참여 유도를 위한 강좌 개발 등이 있어야 할 것임.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주지역 대학, 시민단체, 정당 등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있음.

2. 향후 과제

-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으로 법·제도적 개선과 정당의 역할, 정치도지사 양성의 중요성 등이 제기되었으며, 제주지역의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사회와 정당, 유권자들이 유념하여 추진해야 하고, 추진 가능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함.
- 특히 정계에 진출한 비례대표 여성도의원의 선거경험과 일부 여성 후보자의 선거경험을 토대로 하여 추진해야 할 과제를 도출해보았음.

1) 제주지역 여성의 정치참여 여건 조성

- 비례대표직 여성의원들은 차후 지역구로 출마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역구 관리와 선거출마에 대비하여 철저한 사전 준비(공천, 인적·물적 지원 마련 등)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
- 여성후보자의 공천여건 조성이 중요하며, 이는 남성후보자와 경선하지 않고 당선 가능한 지역구에 전략 공천을 시도할 수 있도록 정당의 역할이 중요함.
- 여성 후보자 후원 방법의 다양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음. 여기에는 선거기탁금도 중요하지만 여성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동안 여성만의 역할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함.

2)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해 정당과 제주도당의 역할 강화

- 정당별 공천권의 투명성 보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제주도당의 문제라기보

다는 정당 차원의 개혁과 법적 장치가 수반되어야 함. 또한 여성친화적인 공천심사기준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주요 당직에 여성할당제 도입의 명문화를 요구해야 할 것임.

-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으로 ‘법·제도적 개선, 비례대표여성할당제, 여성 의무공천제, 사회문화적여건 성숙’ 등이 갖추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당과 제주도당의 의무가 중요함.
- 정당에 따라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당헌·당규로 강제조항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당헌·당규대로 준수하기를 요구하며, 공천심사위원 등 주요 당직에 여성위원 참여를 요구함으로써 정당 내에서 여성위원의 입지 강화가 필요함.
- 각 정당별로 여성 후보자와 여성 정치인 양성을 위한 당헌·당규가 제정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확인이 필요함. 따라서 이러한 제도의 실현을 위하여 권고사항이 아니라 강제조항을 명시하고, 여성당원들은 자신이 소속된 정당의 의무를 모니터하고, 잘 지키도록 요청해야 함. 결국 후보 추천권을 갖고 있는 정당의 변화 없이는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봄.
-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정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나 변화가 더디므로 시민사회와 유권자들의 의식변화 유도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즉 여성후보공천에 대한 소극적인 입장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여성계의 적극적인 활동을 모색하며, 여성후보 발굴과 육성 지원에 주력하고, 여성후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3) 법·제도적 개선

- 비례대표제도의 원래 목적대로 직능별 대표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여성 비례대표의원은 지역구에 출마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비례대표 할당제 유지와 비율 확대가 필요함.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의원들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생활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사회의 견제와 협조가 필요하며, 정당의 공헌도에 따라 공천에 의한 의회진출보다는 전문적인 능력을 지닌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유도하고 정당을 초월하여 추천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여성의무공천제 확대가 추진되어야 함. 이를 위해 비례대표 출신 여성의원의 경력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일정 비율 지역구 공천 의무화는 물론 공천심사위원회에 여성위원 참여율이 50% 되도록 당헌당규의 명문화를 요구할 필요가 있음.
-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적어도 선출직 30% 여성공천 할당제가 강제조항이 되어야 하며, 이 목표달성을 위하여 여성당원들은 자신들의 정당에 요구해야 하고, 여성계에서도 압력을 가해야 함.
- 정당별 여성발전기금의 목적을 투명하게 함.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정당별로 배정되는 여성발전기금은 원래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소속 정당을 압박할 필요가 있으며, 이 기금의 규모를 매년 증액하는 방안이 필요함. 또한 이 기금은 지역의 여성정치인 양성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여성정치인들도 이 제도를 심분 활용하려는 의지가 필요함.

4) 여성의 정치·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지속적 관리

- 제주지역 여성들의 정치·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함. 즉 정당별 ‘아카데미운영’은 각계각층의 인력을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봄.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초당적 성격을 지닌 기구가 ‘여성정치아카데미’ 운영주체가 되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단계별 운영이 가능하도록 협력과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함. 또한 정당별, 제주도당별로 차세대 여성 정치지도자 양성을 위한 중장기프로그램 개발·운영이 필요하다고 봄.
- 여성 정치인들은 선구자적 입장에서 후배 양성의 멘토가 되어야 하며, 제주사회에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에 대한 중요도를 인식시키는 활약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여성 정치인(지역구, 비례대표 모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4년간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도민과 정당, 여성계가 결집하여 정책적 협조를 공조할 필요가 있음.
- 여성 정치인들은 사명감을 갖고 여성정책은 물론 제주도의 다양한 정책들을 입안하고 추진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음. 특히 여성들의 정치참여의식, 여성 권익을 보호하는 등 여성의원들의 장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여성들의 연대가 중요하다고 봄.
- 기성세대를 위한 정치아카데미 운영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차세대 여성지도자 양성에 인적·물적 지원제도가 필요함.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적어도 제

주지역의 10~20대 대상 청년들의 정치참여 계기를 마련해 주고 여성들의 정치참여 유도를 위한 강좌를 개발 운영해야 함. 이를 위해 제주지역 대학, 시민단체, 언론계 등이 공동으로 강좌 운영이 가능하도록 공동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5) 중대선거구제 채택

- 선거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구에 대한 책정으로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된 미국과 유럽을 보면 소선거구제 보다 중대선거구제에서 여성의 당선율이 높게 나타남.
- 단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는 여성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함. 이는 우리의 경우 정당정치에 있어서 여성은 정당의 공천을 받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성들에게 당선 가능한 선거구보다 당선이 희박하거나 상징적 의미의 여성참여를 내세우기 위해 여성을 할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 이러한 경우 여성 공천자가 많다 하더라도 당선 확률은 낮아지며, 소선거구제에서는 중대선거구제에 비해 더욱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조직력과 경제력이 부족한 여성후보는 남성후보와 대결하여 당선되기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하여 선거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봄.

6) 지역사회와 여성계의 역할 강화

- 제주지역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사회와 여성계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여성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선거전략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함.
- 이를 위해 정당활동 참여와 공천 확보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충분한 준비기간 마련을 유도하며 지원해 주고, 또한 제주지역의 다양한 사회활동과 적극적 참여를 통해 인지도 확보 기회를 제공해 주는 방안이 있음.
- 여성단체에서 여성 후보자 양성 지원 추진이 필요하다고 봄.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단체 중심 여성정치지도자 양성교육 기회 확대,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여성정치지도자 양성교육 기회 확대, 여성단체 중심 일반여성 대상 정치의식 교육 등이 있음.

- 지방의회 진출 여성위원의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통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시도할 수 있음.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위원의 의정활동 도우미, 여성도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는 동시에 여성단체와 일반여성이 중심이 되어 여성도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그 결과 우수성을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여성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봄.

참고문헌

- 경북여성정책개발원(2006), 『지방선거를 통해서 본 여성 풀뿌리 정치의 가능성』.
- 고경민·장성훈(2006), 「역대 서울특별시 지방의원의 사회적 배경과 총원 유형」, 『서울학연구』 26, 서울학연구소.
- 국영애(2006), 「5·31지방선거와 여성정치 발전방향」, 『학술대회자료집』, 한국거버넌스학회.
- 김민경(2011),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주요 정당 여성위원장이 제시한 과제를 중심으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한 초청토론회』 자료집,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순효(2011), 「지방선거에서 여성후보자 선택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탐라대학교 경영·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원홍 외(2006), 『기초의회 선거제도의 변화가 여성의 대표성에 미치는 효과와 향후 과제 - 2006. 5. 31.지방선거를 중심으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원홍(1998), 「한국내 여성정치 연구의 진단」, 『한국 정치학회보』 제32집 제2호, 한국정치학회.
- 김원홍·김은경(2010), 『2010 지방선거와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원홍·김혜영·김은경(2000), 『정당의 여성 당직자 확대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 김진호·강성의, (2002), 「제주 여성의 정치참여 제고를 위한 비교고찰」, 『사회발전연구』 제17집,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김형준(2008), 「여성 정치참여를 통한 여성의 정치 세력화에 대한 고찰」, 『여성학논집』 25-1.
- 김형철(2011), 「대한민국 제5회 지방선거」, 『선거연구』 제1권 1호, 한국선거학회.
- 라미경(2005),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한 여성단체의 역할」,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2권 제2호, 한국거버넌스학회.
- 박재규 외(2009), 『경기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방안 연구—여성정치지도자 양성 및 성후보자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박홍식(1996), 「한국여성의 정치세력화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학위 논문.
- 부산여성가족개발원·부산여성뉴스(2011), 『제9회 부산여성가족정책포럼-2012 총선 부산 여성의 정치참여』 자료집.
- 손봉수·박의경(2000), 『한국 민주주의와 여성정치』, 풀빛.
- 엄태석(2003), 「2002년 충북지역 지방선거 특징과 지방선거제도의 개선방안」, 『서문화논총』 제17권, 서원대학교호서문화연구소.
- 여성가족부(2011), 『2011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유공순(2002), 「여성인력의 개발과 활성화 방안」, 『사회과학논총』 제24집 1호, 청주대학교.
 유재원(2003), 『한국의 지방정치론-이론과 실제』, 박영사.
 이범준·신승권(1996), 『정치학(개정판)』, 박영사.
 이영애(2002), 「여성 정치참여의 측면에서 본 6.13 지방선거결과의 분석 및 평가」, 『영남국
 제정치학회보』 5권 1호,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2005), 『제주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 실태조사-제주도내 여성단
 체 임원 및 일반여성을 중심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2011), 『전국동시지방선거 총람 각권별』.
 최종두(1985), 『민주정치와 선거론』, 태창출판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1),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한 초청토론회』 자료집.
 한승주(2002), 「전라북도 여성의 의식 및 생활실태 조사를 통한 정책적 제안 모색 -경제 및
 정치, 행정분야를 중심으로-」, 『지방자치연구』 제10호, 전북대학교 지방자치연
 구소.
 한겨레신문사(1999), 『한겨레21』, 제281호.
 행정안전부(2009), 『2009년 지역별 인구통계』.
 황아란·서복경(2011),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과 선거제도 효과 - 지방의원 선거를 중심
 으로”, 『선거연구』 제1권 1호, 한국선거학회.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http://www.mogef.go.kr>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 : <http://jj.election.g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http://www.nec.go.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사이트 : <http://www.kwdi.re.kr>

<Abstract>

Expanding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in Jeju

– focusing on women councilors entering the provincial council by proportional representation –

Moon soon deok · Kim jin ho

In Korea,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began discussing ways to expand in 1991, when a local self-governing system revived. With proportional representation for women installed in the megalopolis council in 1995, women tried to take a part in the political area. It is important for women to participate in politics, which improves women's rights, discrimination and inequality to secure women's political rights and status.

It is women's political power that is needed to develop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There are some ways to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a indirect one by voting, a direct one by being elected to the council activities, and another way that citizens' organizations with women's groups vote the candidates or political parties for women's policy initiatives.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esent status of political participation of the 11 women councilors directly elected as a way to develop the representation of women's political power. Women candidates running for the general or the local election face common problems such as the party's nomination, sponsorship, district management, awareness, and election costs. These are the tricky things they can't solve in a short term. So it has been required to make the conditions that women take part in politics continually and women councilor occupy the main position of the party, and to improve the legislative system such as proportional representation quotas and compulsory woman nomination. To expand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compulsory woman nomination system should be improved, political leaders trained, and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educational courses also operated. In addition, the local society helps prepare women politicians with the condition to make a political action a community of women in political activities as a politician to have to participate in creating the conditions, and women politicians should reveal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through their council activities.

So far, Jeju hasn't had a woman council directly elected. Therefore this study is to prepare the ways to elect women councilors in local elections from now on. To realize such a purpose, national and local parties, and local communities need to get together to search for the alternatives. That is just a way to expand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Key words: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al representation, political power, political parties, woman councilo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quota, compulsory woman nomination, political leaders.

<부록 1> 설문지 - 제주지역의 여성 정치참여 관련 심층면접 조사

제주지역의 여성 정치참여 확대 방안 의견 조사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선거가 실시된 1995년 이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정치참여 방안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지역에서는 여성의 정치참여 정도를 파악해 보기 위하여 <제주지역의 여성 정치참여 확대 방안> 연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설문지는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이 설문지의 질문에 성심껏 응답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의견은 여성 정치참여의 극대화 방안을 찾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설문조사 내용은 정책자료 목적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응답 내용은 국제통계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됩니다.

이 실증조사를 통하여 더욱 객관적인 정책 수립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7월

 제주발전연구원 원장 양 영 오

I. 제주지역 여성의 정치참여

1. 여성의 정치참여가 과거에 비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2.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낮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2-1. (긍정적 개선 답변의 경우) 개선되었다면 어떤 요인들이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하십니까?
 - 2-2. (부정적 답변의 경우) 변화가 없었다면 어떤 요인들이 가장 참여를 저해하게 만든다고 평가하십니까?

II. 정당적 관점

3. 여성 정치참여를 높이는데 소속 정당의 역할은 어떠했다고 평가하십니까?
 - 3-1. (긍정 답변의 경우) 소속 정당이 여성 정치참여를 높이는 역할에 있어 중앙당 차원에서 기여한 점은 무엇입니까?
 - 3-1-1. (긍정 답변의 경우) 제주 도당 차원에서 기여한 점은 무엇입니까?
 - 3-2. (부정 답변의 경우) 소속 정당이 중앙당 차원에서 여성 정치참여를 높이지 못하는 한계는 무엇입니까?
 - 3-2-1. (부정 답변의 경우) 제주 도당 차원에서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4. 제주지역 여성의 정치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앞으로 정당이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5. 다음 지방선거 이전까지 이를 위해 정당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6. 여성의 정치참여 증진을 위해 정당이 장기적인 목표를 무엇으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III. 법·제도적 개선

7. 여성 정치참여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7-1. (긍정 답변의 경우) 어떠한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7-1-1. (긍정 답변의 경우) 말씀해 주신 부분이 개선되면 여성의 정치참여에 어떠한 기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7-2. (부정 답변의 경우) 법·제도적 개선이 없이 여성 정치참여 증진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7-2-1. (부정 답변의 경우) 그러한 방안이 법 제도적 개선과 같이 진행된다면 더욱 효과적인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IV.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8. 정당의 비례대표 여성할당제가 여성의 정치참여 증진에 기여했다고 평가하십니까?

9. 비례대표 추천을 희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0. 비례대표 제도를 유지/확대/폐기 중 어떤 입장을 지지하십니까?

10-1. (유지일 경우) 유지해야하는 구체적 이유는 무엇입니까?

10-2. (확대의 경우) 확대해야하는 구체적 이유는 무엇입니까?

10-3. (폐기의 경우) 폐기해야하는 구체적 이유는 무엇입니까?

V. 지역별 정당 여성의무공천제

11. 지난 지방 선거에서 지역별 정당 여성의무 공천제가 정치참여를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하시나요?

11-1. 이 제도의 효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로 나누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니까?

12. 이 제도의 유지/확대/폐기 중 어떤 입장을 지지하십니까?

12-1. 그러한 입장을 지지하는 구체적 이유는 무엇입니까?

12-2. (부정의 경우) 기여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3. 이 제도를 유지/확대/폐기 중 어떤 입장을 지지하십니까?

13-1. 그러한 입장을 지지하는 구체적 이유를 말씀해주십시오.

VI. 사회문화적 관점

14. 제주지역 여성 정치참여를 저해하는 사회문화적 요인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4-1. 그러한 저해 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4-2. 그러한 방안을 실행할 주체는 누구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5. 제주지역 여성단체가 적극적으로 정치참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6. 제주지역 여성단체의 정치참여를 높이기 위한 지원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17. 정치하는데 있어 여성단체나 다른 지역사회단체(종교, 학교 운영위원회, 반사회, 직장동료단체, 동호회, 학부모 단체, 기관, 향우회 등)의 도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8. 제주지역에서 여성정치인으로 활동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18-1. 그러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19. 여성 지도자 양성을 위해 의원님이 기여하신 바는 무엇입니까?
20. 여성정치지도자 양성교육과정의 참여 경험이 있으십니까?
- 20-1. 양성교육과정 참여 경험이 있다면 교육과정의 충분성과 불충분한 경우 추가 제공을 희망하는 과정은 무엇입니까? (교육과정의 장·단점)
21. 여성 정치인 양성을 위해 앞으로 계획하신 바가 있으시다면 어떤 계획입니까?
22. 여성 정치인 양성을 저해하는 요인들 중에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문화적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3. 여성 정치인 양성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회문화적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4. 마지막으로 후배 여성정치인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2> 정당별 여성 관련 당헌·당규 발췌

1. 한나라당

가. 당헌

제2장 당 원

제6조 (권리 및 의무)

- ⑥ 각종 당직과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임명 또는 추천함에 있어서 유권자수에 비례하여 지역, 여성 및 청년당원의 대표성이 보장되도록 참여기회를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확대하여야 하며, 당헌 또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각종 의결기관의 선임 대의원 및 선거인단 구성 시 여성을 50%로 한다.
 2. 각종 선거(지역구)의 후보자 추천 시 여성을 30%로 하도록 한다.
 3. 주요 당직 및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여성을 30%로 한다.

제3장 당 기 구

제1절 전당대회

제13조 (구성)

- ⑤ 제1항 제17호 내지 제18호의 대의원 중 50%는 여성으로 구성한다.

제4절 대표최고위원

제28조 (선출직 최고위원)

- ① 선출직 최고위원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서 2위 내지 5위의 득표자로 한다. 다만 5위 득표자 이내에 여성당선자가 1명도 없을 경우에는 5위 득표자 대신 여성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최고위원으로 한다.

제15절 여성위원회

제55조 (구성 및 기능)

- ① 여성에 대한 당 지지도 확산과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및 여성권익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위원회를 둔다.

- ② 여성위원회는 여성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여성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둔다.
- ④ 여성위원장은 제19조제17호의 전국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최다득표자로 하고, 부위원장은 여성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 ⑤ 여성위원회는 제19조제17호에 해당하는 전국위원 선출을 주관하며, 선출방식 및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⑥ 여성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8절 정책연구소 및 특별기구

제68조 (기타 특별기구)

- ③ 대표최고위원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인재의 발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당내 여성정치발전기금을 구성·운영한다.
- ④ 대표최고위원은 여성·청년 등의 신진 정치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내 정치교육과정을 두며, 여성이 50%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제5장 대통령후보자의 선출

제33절 정책위원회

제91조 (국민참여선거인단 구성 등)

- ③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가 규정한 선거인단은 각각 여성이 50%로 한다.

제6장 공직후보자의 추천제

제98조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 ④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지역·직능 등의 균형적 안배 및 당내 기여도를 고려하여 선정하고, 전략지역에 30%를 우선 배정하여야 하며, 여성이 50%이상 포함되도록 하되 그 순서는 성별 교차식으로 한다.

제100조 (기타 공직후보자의 추천)

- ③ 비례대표 시·도의회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원후보자는 해당 시·도당 공천

심사위원회(시·도당 비례대표공천심사위원회 포함)의 심사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며 대표최고위원이 추천한다. 다만,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 후보에 여성이 50%이상 포함되도록 하며,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한다.

나. 당규

전당대회규정

제2장 전당대회 대의원

제2조 (대의원 정수)

⑥ 제1항 제17호 내지 제18호의 대의원 중 50%는 여성으로 구성한다.

전국위원회규정

제2조 (구성)

③ 제1항 제20호의 전국위원 선임시 여성을 50%로 한다.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8조의 2 (선거인단)

③ 당원협의회별로 배정된 당원 선거인은 여성을 50%로 하며, 자치구나 시 단위의 기초단체 지역은 만 45세 미만인 30% 이상, 군 단위의 기초단체지역은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⑥ 청년 선거인 중 50%는 여성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장 선 출

제43조 (당선인 결정)

③ 최고위원 당선인 결정은 대표최고위원 선거에서 2위 내지 5위 득표자로 한다. 다만, 5위 득표자 이내에 여성당선자가 1명도 없을 경우에는 5위 득표자 대신 여성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최고위원으로 한다.

사무처규정

제2장 당무집행기구

제1절 중앙사무처

제 7 조 (여성국) 여성국에 여성1팀과 여성2팀을 둔다.

- ① 여성1팀은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활동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 여성정치지도자 육성 및 교육
 3. 여성위원회 및 차세대여성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4. 각급 공직선거 여성후보자 지원활동
 5. 여성정치발전기금 사용계획 수립 및 집행
 6. 기타 여성관련 사항
- ② 여성2팀은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이버상의 여성조직 활동지원
 2. 당 여성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
 3. 여성직능단체 및 기관과의 유대강화 및 여론수렴
 4. 여성정책 및 홍보에 관한 활동
 5. 20·30대 여성유권자, 근로여성 및 여대생 관련 활동
 6.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정의 자립 및 지원 활동
 7.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자립 및 지원활동

제3장 사무처당직자의 임면과 복무

제15조 (여성할당)

사무처당직자의 신규 임용시 연도별기준으로 하여 여성을 30%이상 임용하도록 한다.

제32조 (상임전국위원)

- ② 4위 득표자 이내에 여성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수 득표자 3인과 여성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 1인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중에 여성이 없는 경우, 1위 내지 3위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잔여 정원은 여성 중앙위원 중 의장이 추천하고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제6장 분과위원회

제38조 (기능) 각 분과협의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5. 제5분과협의회 : 문화관광, 여성, 청년에 관한 사항

재정위원회규정

제3조 (기능)

-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여성정치발전비를 편성할 때에는 중앙여성위원장과 협의하여 편성한다.

여성위원회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여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위원회는 중앙당에 중앙여성위원회, 시·도당에 시·도여성위원회를 둔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on-off line상의 여성유권자 대상 당 지지세 확산활동
2. 각종 여성단체·기관과의 유대강화를 통한 여론수렴 및 정책반영
3. 여성의 정치참여확대 및 지위향상을 위한 활동
4. 여성정치인 및 각 분야 여성지도자의 발굴·양성
5. 각종 공직선거에서 여성후보 확대 및 지원 활동
6. 여성정치발전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7. 당헌 제19조제17호에 해당하는 전국위원 선출을 위한 전국여성대회 주관
8. 국민과 함께 하는 자원봉사활동
9.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 및 다문화가정을 위한 교육·고용 등 안정적인 가정생활 지원 활동
10.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자립 및 지원 등 가족의 삶의 질 향상

제2장 여성위원회

제1절 중앙여성위원회

제4조 (중앙여성위원회) ① 중앙여성위원회는 위원장 1인, 수인의 부위원장,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위원장의 30%이상은 만 45세 미만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여성위원회 위원장(이하 '중앙여성위원장'이라 한다.)은 전국위원 선출을 위한 전국여성대회에서 대의원 유효투표 중 최다득표 한자로 정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중앙여성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되, 부위원장 중 1명을 수석부위원장으로 한다.

③ 중앙여성위원회에 여성 정치참여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인사로서 중앙여성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고문을 둘 수 있다.

④ 중앙여성위원회에 자문위원회 및 필요한 수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자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중앙여성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⑤ 중앙여성위원회 산하에 각계각층의 여성으로 구성되는 다양한 직할조직을 둘 수 있다.

제5조 (중앙여성위원회 운영위원회) ① 중앙여성위원회의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중앙여성위원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중앙여성위원장, 상임전국위원, 당소속 여성국회의원, 여성 당원협의회운영위원장, 전국여성대회 선출 전국위원, 중앙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 중앙차세대여성위원회 위원장, 시·도여성위원회 위원장, 중앙당 실무지원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고, 중앙여성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임명직을 포함하여 총 100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임명직의 30%이상을 만45세미만의 당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여성위원장으로 한다.

제6조 (중앙차세대여성위원회) ① 차세대 여성정치인 및 여성사회지도자를 발굴·양성하고, 차세대 여성유권자에 대한 당 지지세 확산을 위해 중앙여성위원회 산하에 만 45세 미만의 여성으로 구성되는 중앙차세대여성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차세대여성위원회는 위원장 1인, 수인의 부위원장,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중앙여성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중앙차세대여성위원회 위원장의 추천과 중앙여성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제7조 (한나라여성파워네트워크) ① 공직선거에 출마할 소수정예의 여성정치인을 발굴·육성하고 각계각층의 여성인재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나라여성파워네트워크를 둔다.

② 한나라여성파워네트워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③ 한나라여성파워네트워크의 수료자는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시 가산점과 전략 공천시 우선 고려할 수 있다.

제2절 시·도 여성위원회

제8조 (시·도여성위원회) ① 시·도여성위원회는 위원장, 수인의 부위원장,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위원장의 30%이상은 만45세 미만의 당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도여성위원회 위원장(이하 '시·도여성위원장'이라 한다.)은 시·도당위원장의 추천과 중앙여성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며, 부위원장 및 위원은 시·도여성위원장의 추천으로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시·도여성위원회에 여성 정치참여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인사로서 시·도여성위원장의 추천으로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하는 고문 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④ 시·도여성위원회의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시·도여성위원회 운영위원회를 둔다.

⑤ 시·도여성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시·도여성위원장, 전국여성대회 선출 전국위원, 당소속 여성광역의원, 당소속 여성기초의원, 시·도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시·도차세대여성위원회 위원장, 시·도당사무처 여성담당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고, 시·도여성위원장이 추천하고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하는 임명직을 포함하여 총 8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임명직의 30%이상을 만45세미만의 당원으로 구성한다.

⑥ 시·도여성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시·도여성위원장으로 한다.

- ⑦ 시·도여성위원회에 필요한 수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시·도여성위원장의 추천으로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한다.
- ⑧ 시·도여성위원회 산하에 만 45세 미만의 여성으로 구성되는 시·도차세대여성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시·도여성위원장의 추천으로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시·도차세대여성위원장의 추천으로 시·도여성위원장이 임명한다.
- ⑨ 시·도여성위원회 산하에 여성지도자의 발굴·양성과 여성 정치참여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기구로 한나라여성정치아카데미를 두며, 학사관리 등 제반 운영사항에 대한 심의는 시·도여성위원회에서 한다.
- ⑩ 시·도여성위원회 산하에 국회의원 선거구별 또는 자치구·시·군별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여성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⑪ 시·도여성위원회 산하에 각계각층의 여성으로 구성되는 다양한 직할조직을 둘 수 있다.

제3장 전국여성대회

제1절 목적 등

제9조 (목적) 중앙여성위원회는 당헌 제18조 제11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전국위원 선출 등을 위한 전국여성대회를 개최한다.

제10조 (기능) 전국여성대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헌 제55조제4항이 정한 중앙여성위원장 및 제23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하는 상임전국위원의 선출
2. 당헌 제19조제17호에 해당하는 전국위원 선출
3. 당 주요여성정책 및 주요 여성관련 당무에 관한 의견채택

제11조 (소집) ① 정기전국여성대회는 1년마다 중앙여성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중앙여성위원장에게 사퇴 또는 유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전국여성대회를 소집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개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정기전국여성대회는 전임 여성전국위원의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개최하여야 한다.

- ③ 임시전국여성대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전국여성대회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중앙여성위원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 ④ 전국여성대회 소집은 중앙여성위원장이 전국여성대회 개최일전 5일까지 이를 공고한다.
- ⑤ 여성상임전국위원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궐위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국여성대회에서 선출하되, 잔여임기가 4개월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2조 (의결정족수) 이 당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절 중앙여성위원장 및 여성상임전국위원 선출

제13조 (대의원의 구성) ① 중앙여성위원장 및 여성상임전국위원 선출을 위한 대의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하며, 그 정수는 2,500인 이내로 한다.

1. 중앙여성위원장
2. 여성 상임전국위원
3. 당소속 여성 국회의원
4. 당소속 여성 시·도지사
5. 여성 당원협의회운영위원장
6. 여성 전국위원
7. 당소속 여성 자치구 시·군 자치단체장
8. 당소속 여성 시·도의회 의원
9. 당소속 여성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10. 시·도 여성위원장
11. 중앙당 및 시·도당 여성 사무처당직자
12. 중앙여성위원회가 선임하는 책임당원 300인 이내
13. 각 시·도여성위원회가 선임하는 책임당원 30인 이내
14. 시·도별 여성위원회에 할당된 책임당원

② 제1항제14호의 대의원은 대의원 정수에서 제1항제1호 내지 제13호의 대의원을 제외하고 국회의원선거구별로 가장 최근에 실시된 전국단위 공직선거의 유권자 수에 비례하여 할당하되 유권자수가 전체유권자수의 10% 미만인 시·도는

당원협의회별 최소한 3인, 10%이상인 시·도는 당원협의회별 최소한 5인으로 한다.

③ 제1항 제12호 내지 제14호의 대의원은 각각 30%이상을 45세 미만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④ 제1항 제12호 내지 제14호의 대의원의 임기는 다음 정기 전국여성대회 대의원 명부확정시까지로 한다.

제14조 (대의원 당비납부 의무) 당비규정에 정한 당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전국여성대회 대의원은 체납액을 납부할 때까지 대의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제15조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중앙여성위원장 및 여성상임전국위원 선출업무 전반에 관한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에 있어서 최고의결기구로써,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중앙여성위원장 및 여성상임전국위원 선출업무를 마침으로써 종료된다.

제16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1. 중앙여성위원장 및 여성상임전국위원 선출을 위한 세부 시행규칙 제정
2. 선거일 및 후보자 등록 공고
3. 후보자 등록 관련 사무
4.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공지
5. 불법선거운동 단속 및 시정조치
6. 투표 및 개표관리 업무
7. 당선인 결정공고 및 통지
8. 선거 관련 사항의 유권해석
9. 기타 선출관련 제업무

제17조 (위임규정) 중앙여성위원장 및 여성상임전국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관리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피선거권) 국회의원선거의 피선거권이 있고 후보자등록신청일 현재 여성 책임당원인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

제19조 (후보자 등록) ①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신청서 (당 소정양식)
2. 이력서 (당 소정양식)
3. 서약서 (당 소정양식)
4. 범죄 경력 조회서 (벌금형 이상)
5. 주민등록등·초본
6. 당비 납부확인서
7. 기탁금 납부확인서
8. 증명사진 3매

②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 신청시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 (후보자 사퇴)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 (선거일) 선거일은 전국여성대회기간 종료일 20일 이전에 선거관리위원장이 공고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선거일 공고를 변경할 수 있다.

제22조 (선거기간) 선거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23조 (선거운동) ①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은 대표 최고위원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을 준용한다.

②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의한 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일부터 선거일까지 금품·향응·교통편의 제공 등 일체의 기부행위
2. 선거인에게 당직임명이나 공직후보자추천 등을 약속하는 행위
3.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당원에 한하여 서명·날인을 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
4.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일부터 선거일까지 대표 최고위원 및 최고위원 선출 규

정 제35조(선거사무소의 설치 등)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를 제외한 일체의 유사기관 설치 행위

5.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6.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승인 없이 시·도당을 방문하거나 당원모임에 참석하는 행위
7. 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 인신공격, 지역감정 조장행위
8. 선전벽보와 소형인쇄물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홍보물을 제외한 일체의 문서·도화·기타 인쇄물의 배포·발송 행위
9.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게시·배포하는 행위 또는 여론조사를 빙자한 선거운동 행위
10. 유선전화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방법 중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지 아니하는 행위
11. 대표 최고위원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제37조(합동연설회) 규정에 의한 합동연설회를 제외한 일체의 연설회 개최 행위

제24조 (선거방법) ① 선거는 대의원이 투표소에서 투표하거나 인터넷 또는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투표하되, 그 구체적인 방식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투표는 1인 1표를 원칙으로 하되, 최고위원회회의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5조 (당선인 결정) ① 중앙여성위원장은 '중앙여성위원장 및 여성상임전국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의 최다득표자로 하고, 여성상임전국위원은 득표순위에 따라 5위까지로 하되, 후보자가 5인 미만인 경우 잔여인원은 중앙여성위원장이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추천하고, 최고위원회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단, 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그 후보자를 중앙여성위원장 당선인으로 한다.

② 최다득표자 또는 동순위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26조 (당선무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당선은 선거관리위원회회의의 의결을 거쳐 무효로 한다.

1. 후보자 등록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2.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3회 이상 경고 조치한 경우

제3절 여성전국위원 선출

제27조 (선출방법) ① 당헌 제19조제17호에 해당하는 전국위원 중 상임전국위원을 제외한 16인(이하 '여성전국위원'이라 한다.)은 16개 시·도여성위원회에서 선출하

며, 시·도별 정수는 각 1인으로 한다.

② 여성전국위원회는 시·도여성전국위원회 선출을 위해 구성된 대의원의 투표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선출방식 및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여성전국위원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궐위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도여성위원회에서 선출하되, 잔여임기가 4개월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28조 (여성전국위원 선출 대의원) 여성전국위원 선출에 필요한 대의원은 당해 전국여성대회 대의원 중에서 각 시·도당에 소속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29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 여성전국위원 선출을 위해 각 시·도별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해당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한다.

제30조 (위임규정) 여성전국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 선거관리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보 칙

제31조 (준용규정) 전국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 (사퇴시한규정) 현직 중앙여성위원장이 재출마할 경우, 선거일 2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이 경우, 전국여성대회 및 운영위원회 소집 등 중앙여성위원장의 권한은 사무총장이 대행한다.

제33조 (예외규정) 이 규정 확정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전국여성대회의 대의원 자격은 필요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34조 (간사 및 실무지원부서) 대표최고위원은 위원회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중앙당사무처의 특정 부서를 지정할 수 있고, 간사는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35조 (위임규정) 중앙여성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여성위원장이 정한다.

여성정치발전기금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여성정치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구성한다.

1. 정당지원 국고보조금의 10%와 중앙당 당비의 일정비율
2. 여성위원회 기금 및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위한 여성정치인 발굴 및 양성
2. 각급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여성후보자 지원
3. 여성정치지도자 및 예비여성정치인의 여성정치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4.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및 홍보
5. 시·도당의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활동 지원
6. 국내외 여성단체, 기관과의 유대강화 및 여론수렴 활동

제4조 (기금의 운용과 관리) 기금의 운용 및 관리는 여성위원회에 일임한다.

제5조 (회계) 기금의 회계처리는 당헌 제9절(재정위원회)제46조(기능)제3항 내지 제5항에 의한다.

지방조직운영규정

제2장 시·도당

제4조 (시·도당대회의 구성)

- ②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한 대의원의 정수는 전체 대의원 수의 5% 이내에서 시·도당운영위원회가 정하되, 여성 50% 이상 만45세 미만 20% 이상으로 구성한다.
- ④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한 대의원의 정수와 당원협의회별로 선임하는 당원의 수는 시·도당운영위원회에서 정하되, 대의원의 정수는 전체대의원 수의 50% 이상이 되어야 하고, 여성 50% 이상, 만40세 미만 30% 이상으로 구성한다.
- ⑧ 제2항 제1호의 부위원장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부위원장 중 해당 시·도 관할 국회의원 선거구 수를 넘지 않는 인원을 선임하되, 10인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위원장 중 30%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

대통령후보자선출규정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5 조의3 (전당대회 대의원)

⑥ 제1항 제15호 내지 제16호의 대의원중 50%는 여성으로 구성한다.

제15조의4 (당원 선거인)

③ 당원협의회별로 배정된 당원 선거인은 여성을 50%로 하며, 자치구나 시 단위의 기초단체 지역은 45세 미만인 30%이상, 군 단위의 기초단체지역은 2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의5 (국민 선거인)

③ 국회의원선거구별로 배정된 국민 선거인은 여성을 50%로 하며, 자치구나 시단위의 기초자치단체지역은 45세 미만이 30% 이상, 군 단위의 기초자치단체지역은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공직후보자추천규정

제3장 공직후보자 심사

제8조 (자격심사)

⑥ 위원회는 각종 공직후보자 추천시 여성·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 및 유능한 정치신인과 사무처 당직자 중 당 기여도가 높은 인사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추천한다.

제10장 지역구 시·도회의의원 및 자치구·시·군회의의원 후보자의 추천

③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추천시, 국회의원 지역구(군 지역 제외, 자치구 일부지역이 타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해 한 국회의원 지역구로 된 경우에도 그 자치구 일부지역 제외)별로 관할 광역·기초의원 정수 중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2. 민주당

가. 당헌

제2장 당 원

제7조(양성평등 실현) ①우리 당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보장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구현하고, 여성당원의 지위와 권리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한다.

②우리 당은 제1항의 실현을 위하여 중앙당 및 시·도당의 주요당직과 각급 위원회의 구성, 공직선거의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당헌·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당원이 100분의 30 이상 포함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9.3.3>

제3장 대의기관

제1절 전국대의원대회

제12조(지위와 구성)

④제2항 제17호의 대의원에는 여성당원이 30%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청년당원이 30%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제4장 집행기관

제1절 당무위원회

제19조(지위와 구성)

13.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는 약간 명의 당무위원. 이 중 여성이 100분의 30이 되도록 노력한다.

제24조 (최고위원회의 지위와 구성)

④제2항제3호의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여성 1인이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여성이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여성당선거자가 없는 때에는 당대표는 여성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최고위원으로 지명하여야 한다.<개정 2010.10.3>

제34조(전국여성위원회)

①여성조직의 확대와 정치참여 확대, 여성의 지위 향상, 여성정책 개발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최고위원회 아래에 전국여성위원회를 둔다.

②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국여성위원회 아래에 여성정치인을 발굴·육성하고 여성인재를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둔다.<개정 2010.10.3>

③전국여성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장 지방조직

제1절 시·도당대의원대회

제3절 후보자 추천 관련 기구

②공심위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위원이 위원회 정원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10.2.5>

제89조(자치구청장·시장·군수선거후보자 추천)

④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체 선거구 수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후보자를 포함한다)를 선정하여 당무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추천을 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후보자를 100분의 30 이상 선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0.2.5>

제90조(지역구시·도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④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선거연대의 필요성 또는 여성, 청년,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위하여 당대표는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시·도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후보자를 포함한다)를 선정하고 후보자 추천여부 또는 후보자를 당무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확정할 수 있다.<신설 2010.2.5>

제91조(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⑤제1항부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선거연대의 필요성 또는 여성, 청년,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위하여 당대표는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시·도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후보자를 포함한다)를 선정하고 후보자 추천여부 또는 후보자를 당무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확정할 수 있다.<신설 2010.2.5>

제11장 공직선거

제3절 후보자 추천 관련 기구

제84조(공직선거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

②공심위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위원이 위원회 정원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10.2.5>

제89조(자치구청장·시장·군수선거후보자 추천)

④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전체 선거구 수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후보자를 포함한다)를 선정하여 당무위원회의의 인준을 얻어 추천을 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후보자를 100분의 30 이상 선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0.2.5>

제90조(지역구시·도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④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선거연대의 필요성 또는 여성, 청년,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위하여 당대표는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해당 시·도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후보자를 포함한다)를 선정하고 후보자 추천여부 또는 후보자를 당무위원회의의 인준을 얻어 확정할 수 있다.<신설 2010.2.5>

제91조(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⑤제1항부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선거연대의 필요성 또는 여성, 청년,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위하여 당대표는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해당 시·도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후보자를 포함한다)를 선정하고 후보자 추천여부 또는 후보자를 당무위원회의의 인준을 얻어 확정할 수 있다.<신설 2010.2.5>

제5절 후보자 추천심사

제94조(심사기준)

③중앙당공심위는 사전에 제1항 및 제2항을 반영한 공직선거후보자추천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을 마련하여 최고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당무위원회의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이 경우 여성, 청년, 장애인, 사무직당직자 및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2.5>

제96조(추천선거)

⑤경선에 참여한 여성후보자에 대하여는 일정 비율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다만, 당규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2.5>

나. 당규

중앙조직규정

제3장 집행기관

제1절 전국대의원대회

제10조(여성·청년 대의원) 당헌 제12조(지위와 구성)제2항제17호의 대의원 중 여성당원이 만45세 이하인 경우 청년당원의 비율에 중복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3절 전국위원회<개정 2010.9.27>

제34조(전국여성위원회) ①전국여성위원회에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을 둔다.
<조항개정 2008.8.21>

②전국여성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여성당원이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0.9.27>

③전국여성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④<삭제 2010.10.28>

⑤전국여성위원회 아래에 주요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50인 이하의 운영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여성위원장과 부위원장
2. 시·도당여성위원장
3. 여성 국회의원
4. 여성 최고위원<조호신설 2008.9.25>
5. 여성리더십센터 소장<조호신설 2008.9.25>
6. 여성지방의원협의회 대표 2인<신설 2010.9.27>

7. 전국여성위원장이 추천하고 당대표가 임명하는 운영위원<조호개정 2008.9.25>

⑥전국여성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여성국이 담당한다.<개정 2011.6.1>

⑦전국여성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5조(여성리더십센터) ①전국여성위원회 아래에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여성정치인 발굴·육성, 여성인재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여성리더십센터를 설치한다.<개정 2010.9.27>

②여성리더십센터에는 소장 및 약간 명의 부소장을 두고, 필요한 수의 위원을 둘 수 있다.

③여성리더십센터의 소장, 부소장 및 위원은 여성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당대표가 임명한다. 이 경우 전국여성위원장을 소장으로 겸임하여 임명할 수 있다.

④여성리더십센터의 업무지원은 여성국이 담당한다.<개정 2011.6.1>

제35조의1(여성지방의원협의회) ①전국여성위원회 아래에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교육 및 정책연구·개발을 위한 여성지방의원협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여성지방의원협의회에는 상임대표 2인 및 약간 명의 부대표를 두고, 필요한 수의 임원을 둘 수 있다.

③여성지방의원협의회의 상임대표, 부대표 및 임원은 여성지방의원협의회의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여성지방의원협의회의 업무지원은 여성국이 담당한다.<개정 2011.6.1>

[신설 2010.9.27]

제5절 사무처

제61조(여성국 <개정 2011.6.1>) ①여성국은 전국여성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여성조직의 확대와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개정 2011.6.1>

②여성국에 국장과 사무직당직자를 둔다.<개정 2011.6.1>

③여성국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6.1>

1.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직 확대 등의 기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1.6.1>

2. 당의 여성조직의 확대와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1.6.1>

3. 당의 여성정책의 홍보에 관한 사항<개정 2011.6.1>

- 4. 각종 여성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개정 2011.6.1>
- 5. 성차별 개선을 위한 활동에 관한 사항<신설 2011.6.1>

선거대책위원회규정

제8조(중앙선거대책본부)

⑤중앙선거대책본부 아래에는 정책위원회, 여성위원회, 청년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직능위원회, 종합상황실 및 분과위원회를 두고,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제10조(여성위원회) ①각급 여성 단체·조직과의 선거운동 협조, 각급 선거대책기구의 여성조직 구성과 지원 등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중앙선거대책본부 아래에 여성위원회를 둔다.

②여성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기구를 둔다.

③제2항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은 당대표가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한다.

④여성위원장은 여성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여성위원장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여성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여성위원장이 직무대행을 지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앙선거대책본부장이 지명한다.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규정

제3조 (구성)

②제1항의 위원에는 여성이 5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지방조직규정

제2절 시·도당의 상무위원회

제26조(각급 위원회) ①시·도당에 여성위원회, 청년위원회, 노인위원회, 장애인위원회, 노동위원회, 대학생위원회, 직능위원회, 지방자치위원회, 교육연수위원회 등을 두고, 기타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개정 2010.9.27>

- 제28조(여성위원회)** ①시·도당에 여성조직 확대 및 여성 관련 정책개발을 위하여 시·도당여성위원회를 두고,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시·도당여성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시·도당여성위원회의 조직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전국여성위원회의 내규를 따른다.

제3장 지역위원회

제2절 지역상무위원회

제46조(구성)

7.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청년위원장, 노인위원장, 장애인위원장, 노동위원장, 대학생위원장, 직능위원장, 지방자치위원장<개정 2010.9.27>

조직강화특별위원회규정

제3장 지역위원장

제18조(지역위원장의 여성·청년 배려) 위원회는 당헌 제7조(양성평등 실현) 및 제8조(청년당원의 지위와 권리)의 규정에 따라 지역위원장에 여성 30% 이상과 일정 비율 이상의 청년이 포함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규정

제2조(구성)

- ③제2항의 위원에는 여성이 5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당대표및최고위원선출규정

제7장 당선인 결정 및 선포

- ①전국대의원의 유효투표결과와 당원여론조사의 결과를 합산하여 다수득표율(또는 다수득표수) 순에 따라 1위를 당대표, 2위부터 6위까지를 최고위원 당선인으로 한다.

②제1항의 합산에 따라 같은 득표율(또는 득표수)이 2인 이상인 때에는 여성, 연장자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4장 심 사

제32조(지역구후보자의 심사기준)

②공심위는 당헌 제7조제1항 및 제94조제3항에 따라 여성, 청년, 장애인, 사무직 당직자 및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심사결과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가산한다.

⑤제4항에 따라 당원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때에는 여성당원이 선거인 중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1조(당원경선)

⑤제4항에 따라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때에는 여성당원 또는 여성대의원이 선거인 중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6조(후보자의 결정)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당헌 제96조제6항에 따라 여성후보자의 경우 본인이 얻은 득표수(득표율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다만, 해당 선거구에서 본인이 신청한 공직과 동일한 공직을 수행한 여성후보자를 포함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달리 정하는 때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53조(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후보자의 순위선정)

④순위는 득표순으로 확정하되, 공직선거법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제3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남성후보자와 여성후보자의 순위를 별도로 정한다.

⑥순위는 득표순으로 확정하되, 공직선거법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제3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남성후보자와 여성후보자의 순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59조(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

③제2항에 따라 지역상무위원회에서 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이 규정 제54조제2

항부터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여성후보자는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달리 정하는 때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3.2>

3. 민주노동당

가. 당헌

제1장 총칙

제6조 (여성당원의 지위와 권리)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여성당원 30% 이상을 할당한다.

제4장 집행기관

2절 최고위원회(2003.11.1 임시당대회 제정) (2006.7.23 임시당대회 개정)

제22조 (지위와 구성)(2008.6.22 임시당대회 개정)

- ③ 위 2항 2호의 최고위원 중에서 노동부문과 농민부문에 1인을 할당하고, 3인 이상을 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노동부문과 농민부문 할당 최고위원의 재보궐 선거는 대의원대회 선출로 한다.

제8장 공직선거

제45조 (국회의원 후보)(2001.2.24 정기당대회 개정) (2003.3.1 정기당대회 개정)
(2005.2.27 정기당대회 개정)(2006.7.23 임시당대회 개정)

- ① 국회의원 지역구후보는 당해 선거구의 지역위원회 당원의 직선으로 선출한다.
- ②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는 당원직선으로 선출하고, 여성에 50%이상, 또한 장애인에 10%이상을 할당한다.
- ③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선거관리와 선출방식 등 국회의원 후보 선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6조(광역단체장 후보와 광역비례대표 의원 후보)(2001.2.24 정기당대회 개정)
(2005.2.27 정기당대회 개정)

- ① 광역단체장 후보는 당해 시·도당의 전체 당원들의 직선으로 선출한다.
- ② 광역비례대표의원 후보는 당해 시·도당 당원들의 직선으로 선출하고, 여성에 50% 이상을 할당한다.

나. 당규

제11호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성

1. 성차별조사위는 당기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2. 성차별조사위 조사위원장과 위원은 해당 당기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되, 과반수는 반드시 여성으로 한다.

제8조 (가해자 처리에 관한 규정)(2006.7.8 4차 중앙위원회 개정)

① 당기위원회는 성차별조사위의 조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징계한다.

1. 가해자 교육 등 성평등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2. 여성의 인권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봉사활동

제10조 (성평등교육 및 징계이행 점검)(2006.7.8 4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0.3.1 7차 중앙위원회 개정)

- ① 광역시도당의 위원장은 해당 광역시도 여성위원회와 협의하여 연 1회 이상 당해 지역 소속의 당원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④ 1항, 2항에 따른 성평등 교육을 실시한 경우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의 사무총장(또는 사무처장)은 당해 연도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매년 12월말까지 중앙당 여성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5호 민주노동당 정보통신 운영 규정

제4조 (정보통신사업 운영 원칙)

- ⑦ 사회적 통념상 온라인상의 소수자와 약자(여성, 동성애자, 장애인 등)를 보호한다.

제20조(피해(추정)자 보호에 관한 조치)

- ③ (신분노출 방지) 게시물을 삭제한 자는 게시판 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시에는 '신분노출 방지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그 경위만을 보고한다. 단, 성폭력 피해(추정)자에 대한 신분은 여성위원회가 타당하게 필요한 이유로 인하여 알고자 할 때 여성위원회에 알려 줄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피해(추정)자가 원하지 않으면 신분을 누구에게든 알릴 수 없다.

제22조(접근권의 제한)

- ① 사회적 통념상 온라인상의 소수자와 약자(여성, 동성애자, 장애인 등)들이 구성한 소모임 등이 보호를 요청할 경우. 단, 실제 위협적이고 지속적인 공격이 있을 경우로 한한다.

제4장 선거구와 당대회 대의원 등의 수

제18조 (공직후보자 중 여성후보의 수)(2008.02.19 개정)

- ① 당이 선출할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후보자 중 1/2 이상은 여성으로 하되, 여성에게 정당명부의 홀수순번을 부여한다.
- ②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별, 광역의원선거별, 기초의원선거별 지역구(선출직) 출마후보의 30%이상을 여성후보에 할당한다. 할당방식은 해당선거시기 방침으로 결정한다. 단, 2006년 지방선거는 별도로 정한다. 또한 2008년 총선에 한하여 20% 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9조(공직후보자 중 장애후보의 수)(2007.08.19 개정)

- ① 당이 선출할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 중 1/10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장애 여성은 홀수 번에 장애일반은 짝수 번으로 하고 정당명부의 1번, 12번, 21번, 32번, 41번, 52번 등의 순으로 장애인후보의 순번을 부여한다.

제22조 (최고위원의 수) 최고위원의 수는 9인으로 하되, 3인은 여성으로 선출한다.
(2008.6.13 2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7장 후보자 등록

제27조 (후보자 등록)

- ④ 후보자 등록신청은 부문(최고위원의 경우), 일반과 여성으로 나누어 하여야 한다.

제8장 선거운동

제40조 (선출방법)(2008.02.19 10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8.6.13 2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0.3.1 7차 중앙위원회 개정)

- ⑤ 나머지 6인의 최고위원 중 3인은 여성명부 등록 후보자 중에, 나머지 3인은 일반명부 등록 후보자 중에 각 선출하되, 선거권자가 전체명부에 1표를 행사한

후 각 명부에 등록된 후보자 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한다.

⑥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장애인명부, 여성명부, 일반명부로 구분하여 등록하되, 선거권자가 장애인명부 1표, 여성명부 일반명부에 각 1표를 행사한 후 각 명부의 다수득표자 순으로 각 명부를 작성한다.

제11장 당선

제60조 (당선자 결정)

개표가 마감되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8조에 규정된 선출방법에 따른 당선자를 결정하여 공고한다. 단,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이 있을 때에는 여성, 입당일, 추천 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당규 제26호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평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장애인차별 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장애인차별 관련 사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 및 광역당기위원회 내에 장애인차별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를 둔다.

① 장애인차별조사위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4. 5인의 조사위원 중 2인 이상은 여성으로 하되 장애여성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4. 국민참여당

가. 당헌

제2장 당원

제10조 (양성평등 실현)

- ①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여성당원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중앙당과 시·도당에 설치하는 모든 위원회, 당직선거와 선출직 공직후보자 추천 및 각급 선거인단에 있어서 여성이 30%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한다.
- ②모든 비례대표 공직후보의 추천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을 50% 이상 포함하도록 한다.
- ③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6조 (권한)

전국당원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강령과 기본정책의 채택 및 변경
2. 당헌의 제정 및 개정
3. 당의 합당과 해산에 관한 사항의 의결
4.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선출
5. 중앙당헌당기위원장의 선출
6. 전국 여성위원회 위원장, 전국 청년위원회 위원장의 선출
7. 중앙위원회에서 제청된 안건의 의결
8.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의 인준
9. 기타 중요한 안건의 의결

제18조 (당직자의 임기)

- ①당대표, 최고위원, 원내대표 및 원내부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원장, 당헌당기위원장 및 위원, 전국여성위원장, 전국청년위원장, 시·도당위원장, 시·도당집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3절 상임중앙위원회

제25조 (구성)

상임중앙위원회는 50인 이하의 위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대표 및 최고위원
2. 시·도당위원장
3. 전국여성위원장, 전국청년위원장
4.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원장
5. 당헌, 당규의 규정에 따른 상설위원회 위원장
6. 상임고문, 정책연구원장, 국가정책자문위원장
7. 상임중앙위원회가 추천하고 중앙위원회가 의결하여 선임하는 약간 명의 상임 중앙위원

제4절 당대표 및 최고위원회

제28조 (지위와 구성)

- ①최고위원회는 당무집행의 최고의결책임기관이다.
- ②최고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전체 주권당원투표로 선출하는 당대표 1인
 2. 전체 주권당원투표로 선출하는 최고위원 5인
 3. 당대표가 선출직 최고위원과 합의추천하고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지명하는 3인 이내의 위원
 4. 원내대표
- ③전항 2호의 경우, 전국당원대회의 투표 결과 1위부터 5위까지 득표자가 최고위원이 된다. 단, 5위 이내 득표자 중에 여성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5위 득표자를 대신하여 여성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가 최고위원이 된다.

제5절 각종 회의 등

제39조 (주요당직 여성 30% 배정 의무)

중앙당 사무처, 시·도당의 당직 임용 및 승진의 경우 30% 이상 여성이 포함되도록 노력하며, 구체적 계획과 실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절 각종 위원회 등

제45조 (전국여성위원회)

- ①여성조직의 확대와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중앙위원회 아

래에 전국여성위원회를 두고, 시·도위원회에 시·도 여성위원회를 둔다.

②전국여성위원회는 전국여성위원장, 시·도여성위원장, 시·도 자치규약에 의해 선임된 시·도별 여성중앙위원 1인과 전국여성위원장이 시·도여성위원장들과 협의하여 지명한 10인 이내의 지명직 여성중앙위원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③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은 전국당원대회에서 여성 주권당원의 투표로 선출하며,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시·도여성위원장은 해당 지역의 여성 주권당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선출하며,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전국여성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장 선거

제2절 당직선출

제93조 (전략공천지역 등의 선정 및 추천)

⑤제1항의 전략공천지역의 후보자를 선정할 때 여성이 30%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6조 (투·개표 방식)

②공직후보자추천선거에서 여성이 포함될 경우, 그 여성후보의 득표수에 20%를 가산한 득표수를 기준으로 후보자를 결정한다.

제101조 (국회의원 후보자의 추천)

⑥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한다.

제104조 (광역의원 후보자 추천)

⑤비례대표 광역의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한다.

제105조 (기초의원 후보자 추천)

④비례대표 기초의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한다.

나. 당규

제3호 전국(중앙)조직규정

제2장 중앙기구

제2절 중앙위원회

제11조 (중앙위원회 구성)

- ① 당헌 제2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중앙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여성위원회 선출직 중앙위원은 전국여성위원장, 시·도여성위원장, 시·도당 자치규약에 의해 선임된 시·도별 여성중앙위원 1인과 전국여성위원장이 시·도여성위원장과 협의하여 지명한 10명 이내의 지명직 중앙위원으로 한다.

제10절 상설위원회 등

제47조 (전국여성위원회)

- ① 전국여성위원회는 운영위원회를 두며 전국여성위원장이 운영위원장이 된다.
- ②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자문, 여성조직의 확대 등을 위해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 전국여성위원장은 여성위원회의 활동계획 및 결과를 최고위원회 및 상임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호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규정

제3조 (구성)

- ② 제1항의 위원에는 여성이 3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3장 집행기관 및 기구

제1절 의결 및 집행기관

제24조 (여성위원회)

- ① 시·도여성위원회의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관으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시·도여성위원장이 운영위원장을 겸임한다.

③시·도여성위원회 산하에 지역위원회별로 여성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국여성위원회에서 정한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7호 선거관리위원회규정

제1장 총칙

제2조 (설치 및 구성)

⑧선관위에는 여성이 3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3장 선거인명부의 작성과 공고

제6조 (선거인 등)

①당직선출을 위한 선거인은 선거공고일 현재 해당 당부에 속한 당원으로써 선거공고일이 속한 달의 1일에 주권당원인 자로 구성한다.

②당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중앙당헌당기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은 전국주권당원으로 한다.

③전국여성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 피선거인은 여성 주권당원으로 한다.

④전국청년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 피선거인은 청년 주권당원으로 한다..

⑤시·도당위원장, 시·도당헌당기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 피선거인은 해당 시·도 주권당원으로 한다.

⑥시·도당 여성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 피선거인은 해당 시·도 여성 주권당원으로 한다.

⑦시·도당 청년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 피선거인은 해당 시·도 청년주권당원으로 한다.

제7장 선출

제36조 (선출직 최고위원 선출)

③선거에서 5위 이내의 득표자가 당선인이 된다. 단, 5위 이내 득표자 중에 여성이 1인 이상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여성 후보자 중 1위 득표자가 전체 5위 득표자를 대신하여 당선인이 된다.

제38조(전국 여성위원장 선출)

- ① 전국 여성위원장은 여성 주권당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선출한다.
- ② 전국여성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12조 제1항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중앙위원 또는 여성 주권당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참여연구진

- 연구책임 문 순 덕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 공동연구 김 진 호 제주대학교 교수
- 연구보조 고 민 주 제주발전연구원 연구보조원

기본연구 2011-22

제주지역의 여성 정치참여 확대 방안 - 지방의회 진출 여성 도의원을 중심으로 -

발행인 || 양 영 오

발행일 || 2011년 11월

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

690-029 제주시 청사로1길 18-4번지

전화: (064) 726-0500 팩스: (064) 751-2168

홈페이지: www.jdi.re.kr

인쇄처 || 경신인쇄사

ISBN : 978-89-6010-219-4 93340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입장이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